정책연구 2014-2



인구 50만 이상 시의 대동제 실시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 구 진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차 례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제3절 연구의 체계도 ····· 7

제2장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운영실태 ····· 9

제1절 하부행정기관의 의의 ····· 11

1. 하부행정기관의 개념 ····· 11

2.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 ····· 13

제2절 하부행정기관의 운영실태 ····· 16

1. 하부행정기관의 관련법제 ····· 16

2. 하부행정기관의 설치현황 ····· 17

제3장 대동제의 의의 및 실시논거 분석 ····· 21

제1절 대동제의 의의 ····· 23

1. 대동제의 개념 ····· 23

2. 동 행정구역의 필요성과 특성 ····· 25

제2절 창원시의 대동제 적용경과 ····· 28

1. 창원시의 대동제 도입배경 ····· 28

2. 창원시의 대동제 실시과정 ····· 31

3. 창원시의 대동제 실시현황 ····· 35
4. 창원시의 대동제 전후 비교 ····· 38

제3절 대동제의 실시논거 분석 ····· 39
1. 실시논거의 분석방향 ····· 39
2. 정부정책의 기조분석 ····· 40
3. 대안 효과성 분석 ····· 41
4. 대동제 실시논거 ····· 57

제4장 대동제의 실시방안 설계 ····· 59

제1절 검토요소의 도출 ····· 61

제2절 대동제 실시모형의 설계 ····· 63
1. 도출논거 ····· 63
2. 기존연구 검토 ····· 64
3. 대동제 실시모형 ····· 65

제3절 광역(廣域)동 모형의 설계 ····· 66
1. 대안의 개요 ····· 66
2. 동의 규모 ····· 67
3. 관장기능 ····· 70
4. 기구편제 ····· 75
5. 인력규모 ····· 77
6. 대안의 장단점 ····· 79

제4절 중심(中心)동 모형의 설계 ····· 79



1. 대안의 개요 ····· 79
2. 동의 규모 ····· 80
3. 관장기능 ····· 81
4. 기구편제 ····· 82
5. 인력규모 ····· 83
6. 대안의 장단점 ····· 84

제5절 지원적 검토요소의 설계 ····· 85
1.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개정 ····· 85
2. 분동기준의 개정 ····· 86
3. 기구 및 정원규정 개정 ····· 87
4. 기구감축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대책 수립 ····· 87
5. 중앙정부 지원시책에 대한 대안별 형평성 확보 ··· 89

【참고문헌】 ····· 91

【참고 1】 용인시의 구청 위임사무 실태 ····· 92
【참고 2】 용인시의 읍·면·동 위임사무 실태 ····· 116

표 차 례



<표 1-1> 연구의 범위 ····· 5
<표 1-2> 연구의 방법 ····· 6
<표 2-1> 인구 50만 이상 시의 특례사무 ····· 15
<표 2-2>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관련법제 ····· 16
<표 2-3>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설치현황 ····· 18
<표 3-1> 법정동과 행정동의 비교 ····· 24
<표 3-2> 창원시의 대동제 준비과정 ····· 32
<표 3-3> 대동제 시행준비작업 및 시행 ····· 33
<표 3-4> 주민설명회 개최현황 ····· 34
<표 3-5> 주민설문조사 결과 ····· 34
<표 3-6> 대동획정 구역현황 ····· 35
<표 3-7> 대동제 이후 창원시 읍면동 공무원 현황('98.1.1 현재) ·· 37
<표 3-8> 대동제 시행 전후비교 ····· 38
<표 3-9> 하부행정기관 효과분석 방법 ····· 42
<표 3-10> 하부행정기관의 효과성 분석결과 ····· 42
<표 3-11> 일반구의 실태측정 방법 ····· 43
<표 3-12> 일반구 실태분석 결과 ····· 44
<표 3-13> 대도시 일반구 운영실태 분석방법 ····· 45
<표 3-14> 하부행정기관 운영실태 분석결과 ····· 46
<표 3-15> 일반구와 대동제의 효과성 분석방법 ····· 47
<표 3-16> 일반구와 대동제의 효과성 분석결과 ····· 48
<표 3-17> 공무원 대비 주민 수 비교 ····· 50
<표 3-18> 창원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의창구 읍·면·동 인력비교 ····· 52
<표 3-19> 일반구와 대동제의 행정서비스 단위비용 비교 ···· 54

<표 3-20> 창원시 일반구 및 대동제의 행정서비스 비용비교 ·· 54
<표 3-21> 일반구 사무처리 유형 ····· 55
<표 3-22> 일반구와 대동제의 효과성 분석결과 ····· 56
<표 4-1> 대동제 모형에 관한 기존연구 ····· 65
<표 4-2> 대동제 실시모형 설계 ····· 66
<표 4-3> 동 규모의 기존논의 ····· 69
<표 4-4> 기존의 광역(廣域)동 관장기능 검토사례 ····· 71
<표 4-5> 일반구의 광역(廣域)동 이관기능 판별기준 ····· 72
<표 4-6> 일반구 관장기능의 광역(廣域)동 이관기능 예시 ·· 72
<표 4-7> 광역(廣域)동의 인력규모 산정논의 예시 ····· 78
<표 4-8> 광역(廣域)동 모형의 인력추계 사례 ····· 78
<표 4-9> 광역(廣域)동 모형의 장단점 ····· 79
<표 4-10> 중심(中心)동의 장단점 ····· 84
<표 4-11> 형평성 확보방안 ····· 90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 7
<그림 2-1> 하부행정기관의 개념도 ····· 12
<그림 2-2>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 ····· 13
<그림 2-3>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설치목적 ·· 14
<그림 3-1> “동”의 설치 현황 ····· 24
<그림 3-2> 동 행정구역의 개념도 ····· 26
<그림 3-3> 대동제 실시논거의 분석구조 ····· 40
<그림 3-4> 대동제의 실시논거 ····· 58
<그림 4-1> 대안설계의 검토내용 ····· 62
<그림 4-2> 대동제 실시모형의 설계논거 ····· 64
<그림 4-3> 광역(廣域)동 모형의 구조 ····· 67
<그림 4-4> 광역(廣域)동의 규모결정 기준 ····· 68
<그림 4-5> 광역(廣域)동의 관장기능 결정기준 ····· 71
<그림 4-6> 광역(廣域)동의 관장기능 ····· 74
<그림 4-7> 광역(廣域)동의 기구편제 결정기준 ····· 75
<그림 4-8> 광역(廣域)동의 기구편제 검토사례 ····· 76
<그림 4-9> 광역(廣域)동의 기구편제 ····· 76
<그림 4-10> 광역(廣域)동의 인력규모 기준 ····· 77
<그림 4-11> 중심(中心)동 모형의 구조 ····· 80
<그림 4-12> 동 규모의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 · 80
<그림 4-13> 관장기능의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 ····· 81
<그림 4-14> 기구편제의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 ····· 82

<그림 4-15> 인력규모의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 ····· 83

<그림 4-16> 탄력적 기구감축 방안(부천시 기준) ····· 88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도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특례의 하나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반구의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행정기구임
- 다만, 임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반구의 설치 또는 분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예외 없이 일반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일반구의 설치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1개의 행정계층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음
- 행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경로비용의 발생, 행정계층간 기능의 중복, 기구 및 정원의 증가 등 행정운영의 다양한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적정수준의 주민편의를 확보하면서도 행·재정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동제임
- 대동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창원시가 유일하게 채택하였으나, 통합 창원시(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출범하면서 통합이전의 창원시 지역에도 일반구가 설치되어 기존의 대동제 기능이 상실된 실정임
- 현재에는 김해시와 남양주시, 화성시 등이 인구 50만 이상 시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하부행정기관으로 대동제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인구 50만 이상 시의 대동제의 적용은 일부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정책적 검토를 추진하여 왔음

-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구)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지침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반구의 폐지와 동시에 대동제로의 전환을 검토하였음

○ 최근에는 안전행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일반구 대신에 대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내용으로 포함시켰음

- 즉, 2014년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50만 이상 시의 일반구 설치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복지중심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동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보고하였음
- 동 보고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대동제를 실시하되, 2014년 하반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적용하는 것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대동제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의 운영목적과 실태를 분석하고, 대동제의 개념과 실시논거를 기초로 대동제의 실시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 기본모형을 제시함
-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원활한 대동제 실시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일반시에도 대동제의 적용이 가능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임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전술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함

– 분석시간 범위는 2014년 현재시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목표연도는 2014년 하반기 시범실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내용을 모색함

– 대상기관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시범실시는 기존의 일반구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2014년 현재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은 김해시와 남양주시 및 화성시를 중점적인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 연구내용 범위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대동제의 실시논거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대동제의 실시에 필요한 제반요소의 기본모형을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둠

<표 1-1> 연구의 범위

구분	내용
시간 범위	■ 기준연도 : 2014년 - 목표연도 : 2014년 하반기
대상 범위	■ 인구 50만 이상 시 - 실시대안 : 인구 50만 이상 시 전체 - 시범실시 : 김해시, 남양주시, 화성시
내용 범위	■ 대동제 실시대안 설계 - 기본모형 설계

2. 연구의 방법

○ 연구방법은 각 부문별 연구내용에 따라 적정방법을 적의 활용함

– 우선, 일반구 및 대동제 등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의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통계자료 등 기존의 각종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고

– 대동제 실시방안의 구비요소와 요소별 정책대안의 설계에서는 대안의 논리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며

– 대동제의 실시 모형개발에서는 제반 요소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관계자 면담을 활용함

<표 1-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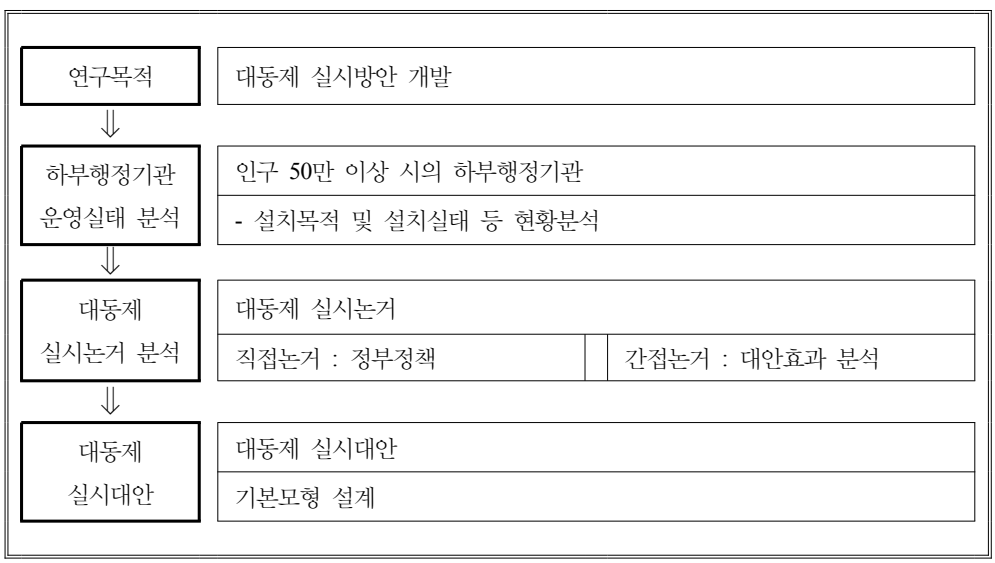
구분	내용
문헌조사	■ 각종 기존논의의 검토
브레인스토밍	■ 대동제 실시방안의 논리성과 타당성 검증
관계자면담	■ 대동제 제반요소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제3절 연구의 체계도

○ 인구 50만 이상 시의 대동제 실시를 위한 연구내용의 체계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로 진행함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설치목적을 규명하고, 정부정책 및 기존연구를 기초로 대동제의 실시논거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대동제 실시의 기본모형을 개발함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제2장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운영실태

제1절 하부행정기관의 의의

제2절 하부행정기관의 운영실태

제2장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운영실태

제1절 하부행정기관의 의의

1. 하부행정기관의 개념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담 및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함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음

○ 일반적으로 하부행정기관은 지역 및 기능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역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하부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으로 관할구역 안에서 종합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일반구(행정시), 읍, 면, 동 등이 해당되며
 – 기능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하부행정기관은 특별행정기관으로 특수한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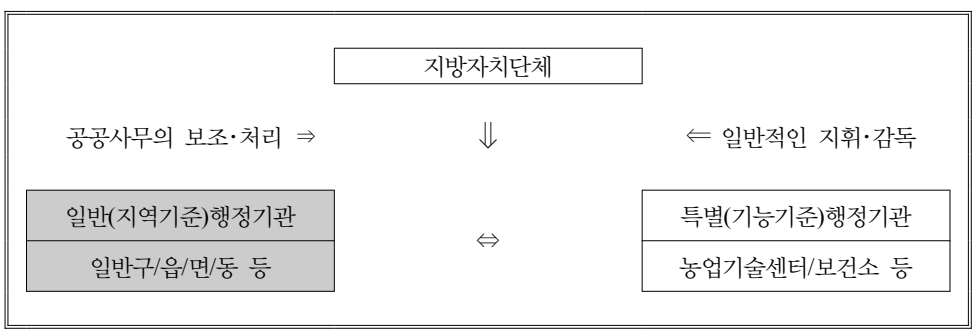
【 행정시 】 행정시는 지방자치법 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계층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인정되는 지방행정기관이고, 법적 지위와 성격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없고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설치되는 행정구와 유사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즉,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그러나 현행「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일반행정기관만을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르면, 일반구, 읍, 면, 동은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은 동법 제113조에서 직속기관으로 분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법제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은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보조 및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음

<그림 2-1> 하부행정기관의 개념도



【참고 1】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 하부행정기관의 하나로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주된 배경은 전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과거와 달리 행정기능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전문화와 기술화가 증대됨으로써 전문분야의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대응하는 것이 요청됨

2.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은「지방자치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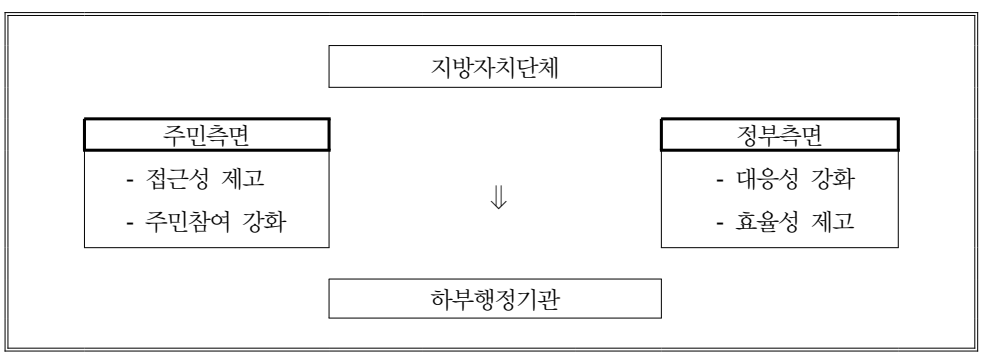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주민과 정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주민측면에서는 하부행정기관이 설치됨으로써 접근성이 제고되고, 주민참여가 강화되는 효과를 확보할 수 있고

– 정부측면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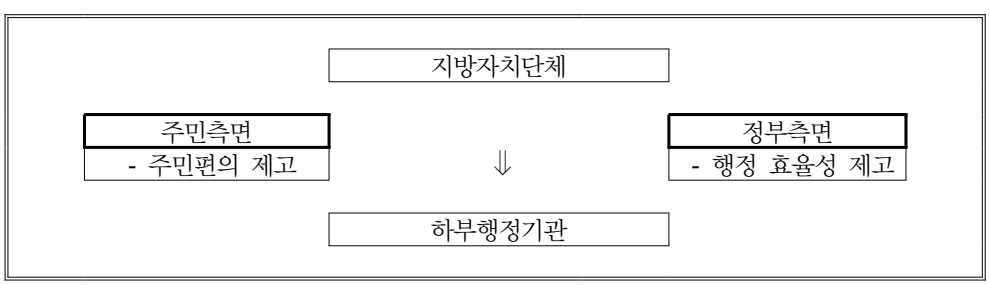
<그림 2-2>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



【참고 2】 하부행정기관 설치의 일반목적
■ 접근성 제고
- 특정관할 구역에서 단일의 정부기관보다 다수 정부기관의 존재가 주민들의 공간적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함
■ 주민참여 강화
-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주민참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경향을 가짐
■ 대응성 강화
- 정부의 규모가 클수록 행정수요에 대해 정부관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반면, 반대의 경우 주민수요와 선호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큼
■ 효율성 제고
- 업무내용에 따라 다수의 정부기관이 분담하여 전담 처리하는 것이 단일 정부기관에 의한 통합처리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지성을 제고함

○ 다만, 50만 이상의 시에 국한할 경우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은 전술한 일반목적에 비하여 일부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지방자치법」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함
 – 상기의 규정은 인구 50만 이상 시가 갖는 대도시적 특성을 감안하여 대도시행정의 효율적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가 함축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을 통한 업무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그림 2-3>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설치목적



<표 2-1> 인구 50만 이상 시의 특례사무

18개 분야	사무내용
보건의료(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지방공기업(2)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주택건설(2)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계획 승인(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경우 제외)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토지구획정리(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도시계획(5)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승인 및 변경승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도시계획의 지적승인 사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도시재개발사업(2)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환경보전(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환경오염물 제거명령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비산먼지 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 중지, 사용제한명령
건설기계 관리(2)	건설기계등록 및 말소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갱신 신고 등
자동차 운송사업(2)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일반구역 화물차, 특수여객자동차) 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자동차 운송사업(택시에 한함)계획변경 인가
공무원인사·정원(1)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정원범위내 6급 이하 정원책정
지적사무(5)	토지의 지번경정 승인
	지적공부의 반출 승인
	축척변경 승인
	지적측량 검사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열사용 기자재(1)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식품제조업(4) (유가공품, 식육제품업)	허가, 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시설의 개수명령
	폐기처분
	허가취소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3)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의 허가
	시체운반업의 허가

18개 분야	사무내용
사회복지시설 사무(1)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수납의 승인
고압가스(1)	고압가스 제조업의 허가
도시가스(1)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지방채(1)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

제2절 하부행정기관의 운영실태

1. 하부행정기관의 관련법제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국한할 경우 하부행정기관(일반구, 대동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제는 다음과 같음

– 설치에 관련된 법제로는「지방자치법」제3조에서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의 2에서 설치절차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7조에서는 분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기구에 관련된 법제로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 제1항에 의거 별표 3에서 구 설치 여부에 따른 실·국 설치범위를 차별화하고 있음

<표 2-2>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관련법제

관련법규		법규내용
설치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음
	설치절차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관련법규		법규내용
설치	분구근거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규칙 제7조)	■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함
기구	기구설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의 구를 설치한 시는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에 비하여 본청 실·국이 2개 적은 4개 실·국을 설치

2. 하부행정기관의 설치현황

○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16개 시임

– 이 가운데 하부행정기관으로 일반구를 설치한 시는 수원시와 성남시를 비롯한 13개 시이고, 김해시와 남양주시 및 화성시 등 3개 시는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읍·면·동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 일반구는 총 33개로 창원시가 5개의 일반구를, 수원시가 4개의 일반구를,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및 용인시가 3개의 일반구를 그리고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 안양시, 포항시 및 천안시가 2개의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음

–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고, 읍·면·동으로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3개 시는 화성시가 3읍10면10동을, 남양주시가 5읍4면7동을 그리고 김해시가 1읍6면12동을 운영하고 있음

<표 2-3>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설치현황

자치단체명	구 별	인 구(명)	면 적(㎢)
수원시 (4개 구)	장안구	306,750	33
	권선구	342,594	47
	팔달구	217,048	13
	영통구	329,673	28
성남시 (3개 구)	수정구	227,476	46
	중원구	255,455	26
	분당구	495,232	69
고양시 (3개 구)	덕양구	416,954	165
	일산동구	284,483	59
	일산서구	297,520	43
부천시 (3개 구)	원미구	452,988	21
	소사구	235,175	13
	오정구	192,744	20
용인시 (3개 구)	처인구	223,573	468
	기흥구	401,074	82
	수지구	340,805	42
안산시 (2개 구)	상록구	390,766	57
	단원구	372,149	91
청주시 (2개 구)	상당구	250,558	69
	흥덕구	382,728	84
전주시 (2개 구)	완산구	365,338	95
	덕진구	285,620	111
안양시 (2개 구)	만안구	254,898	37
	동안구	359,789	22
포항시 (2개 구)	남 구	248,970	393
	북 구	269,926	735
창원시 (5개 구)	의창구	256,348	211
	성산구	240,679	82
	마산합포구	181,803	240
	마산회원구	217,789	91
	진해구	181,533	122
천안시 (2개 구)	동남구	262,401	438
	서북구	333,013	197
화성시 (3읍10면10동)	봉담읍	67,278	43
	우정읍	17,606	60
	향남읍	57,831	50
	매송면	8,810	27
	비봉면	6,073	39
	마도면	6,404	31
	송산면	11,034	54

자치단체명	구 별	인 구(명)	면 적(㎢)
화성시 (3읍10면10동)	서신면	6,879	43
	팔탄면	10,720	51
	장안면	11,209	68
	양감면	4,324	31
	정남면	12,954	41
	동탄면	4,332	46
	남양동	24,695	67
	진안동	36,170	6
	병점1동	28,943	2
	병점2동	27,610	
	반월동	19,731	4
	기배동	15,214	4
	화산동	24,235	12
	동탄1동	52,841	10
	동탄2동	36,287	
	동탄3동	42,896	
남양주시 (5읍4면7동)	와부읍	70,829	50
	진접읍	95,621	66
	화도읍	97,391	72
	진건읍	28,370	33
	오남읍	55,513	25
	별내면	21,711	22
	퇴계원면	30,582	3
	수동면	8,479	73
	조안면	4,266	51
	호평동	45,316	9
	평내동	42,063	7
	금곡동	22,203	7
	양정동	5,470	13
	지금동	17,308	7
	도농동	38,415	2
	별내동	43,344	19
김해시 (1읍6면12동)	진영읍	41,796	40
	주촌면	3,510	31
	진례면	7,847	45
	한림면	9,241	59
	생림면	4,368	50
	상동면	3,502	71
	대동면	7,500	49
	동상동	10,164	2
	회현동	8,730	1
	부원동	7,837	2

자치단체명	구 별	인 구(명)	면 적(㎢)
김해시 (1읍6면12동)	내외동	85,233	5
	북부동	84,906	14
	칠산서부동	10,072	20
	활천동	46,275	6
	삼안동	41,957	11
	불암동	8,846	3
	장유1동	55,255	55
	장유2동	34,844	
	장유3동	53,390	



제3장
대동제의 의의 및 실시논거 분석

제1절 대동제 의의
제2절 창원시의 대동제 적용경과
제3절 대동제의 실시논거 분석

제3장 대동제의 의의 및 실시논거 분석

제1절 대동제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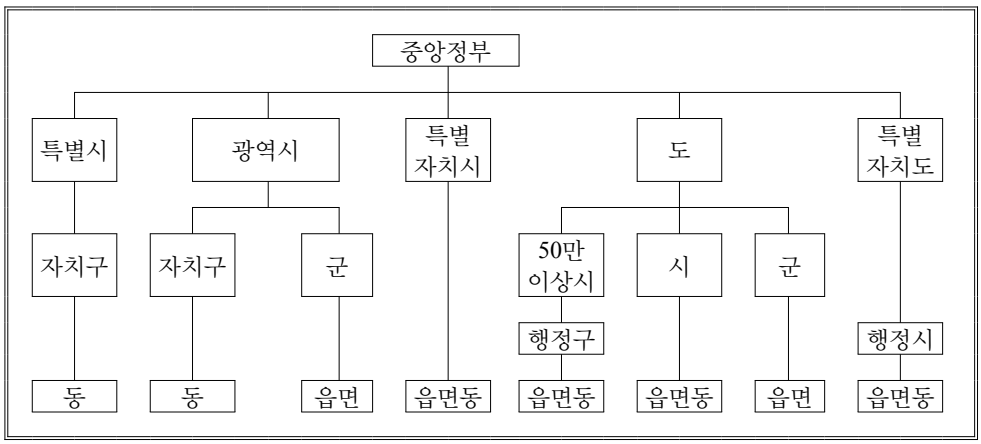
1. 대동제의 개념

○ 대동(大洞)은 학술적 또는 법률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이기보다는 행정운영의 편의를 위한 정책적 용어임
 – 즉, 대동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의 하나인 동(洞)을 본질로 하여 그 행정구역을 상대적으로 확장한 것을 지칭하는 정책적 및 편의적 용어에 불과함

○ 일반적으로 동은 읍·면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임
 – 다만, 읍·면과 달리 동은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자치구에 설치한다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할 당시에 동은 시와 자치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 그리고 읍·면은 군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나, 이후 일부의 변화가 있어 왔음
 –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이후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동뿐만 아니라 읍·면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 또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리고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이후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을 비롯한 동이 설치되고 있음

<그림 3-1> “동”의 설치 현황



○ 이와 같은 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동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 법정동은 공부상의 동으로 속인주의에 의하되, 고정적 성격을 가져 합·분동에 현저한 경직성을 보임

– 이에 따라 읍에서 시로의 승격이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과다 현상이 발생하면, 행정능률이나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동을 설치 및 운영하게 됨

– 주로 행정동은 법정동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함

<표 3-1> 법정동과 행정동의 비교

구분	법정동	행정동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조례
설치 목적	소관 사무의 분장처리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
변경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후 조례제정	조례제정
변경 정도	경직적	탄력적

○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은 기본적으로 도시적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는 하부행정기관의 하나임
 – 이에 근거할 경우 대동은 전술한 하부행정기관인 동의 행정구역을 정책적으로 확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영 시스템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법적 지위와 역할 등에서는 기존의 "동"과 동일하나, 정책적 측면에서 행정구역과 운영 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행정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동 행정구역의 필요성과 특성

1) 동 행정구역의 필요성

(1) 행정적 측면

○ 일반적으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상주인구가 증가하고, 산업 및 경제규모가 커지며, 인간의 활동과 물량의 이동이 빨라지는 동시에 대규모화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대는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나아가 이의 조정 및 해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며
 – 따라서 도시정부의 행정수요는 그에 비례하여 혹은 상승적으로 증대되는 동시에 복잡하게 됨

○ 도시의 방대한 행정량은 도시정부의 기능별 분담부서의 설치와 더불어 지역별 행정분담을 위한 기구의 설치를 요청하게 되는 바
 – 이와 같은 요구의 일환으로 지역별 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임
 – 따라서 동 행정구역은 도시행정의 능률적 처리와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도시전역을 몇 개의 지구로 분할하여 행정적 분권화를 도모한 것임

(2) 시민적 측면

○ 시민적 입장에서 동 행정구역의 필요성은 정부와 시민간의 밀접성을 제고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근거하고 있음

– 하부행정기구로 동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정부상대의 활동에서 시간적 및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구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기에 시민의 복지가 비례적으로 향상되며,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멀리 있는 행정단위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것 등이 그것임

2) 동 행정구역의 특성

○ 동의 행정구역은 시와 자치구(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하부행정기관인 동이 관할하는 지리상의 권역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구역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를 말하고, 법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동의 행정구역은 행정동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 규정할 수 있음

<그림 3-2> 동 행정구역의 개념도

일반목적 자치구역	특수목적 자치구역
일반목적 행정구역 (동 행정구역)	특수목적 행정구역

법적 성격	자치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행정구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한 지역적 단위
기능 성격	일반목적구역	- 지역내에서 일반적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역
	특수목적구역	- 특수한 행정사무를 일정한 지역내에서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역

○ 이러한 동의 행정구역은 역할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
 – 즉, 동의 행정구역은 행정적 기능단위, 구성요소의 이질성, 능률성 지향, 일반목적 기관의 통할단위 등의 특성이 그것임

○ 첫째, 동 행정구역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행정적 기능단위라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은 행정적 기능단위인 동시에 기능적 경제구역(functional economic area)인데 비하여 동의 행정구역은 단순히 행정적 기능중심의 단위에 불과함
 – 다시 말하여, 한 도시의 경제활동은 그 도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움직이며, 그 도시민의 경제적 생활은 그 도시 전체를 그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동과 같은 기반행정구역은 행정능률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획정된 단순한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다는 것임

○ 둘째, 동 행정구역의 또다른 특징은 구성요소의 이질성이 현저하다는 것임
 – 동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이나 읍 및 면의 행정구역에 비하여 상당히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나 그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은 역사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각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간에 등질적인 요소가 많으나, 도시의 기반행정구역인 동의 주민들 사이에는 공통적이거나 등질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빈약함

○ 셋째, 동 행정구역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또다른 측면은 능률성에 대한 의존이 크다는 것임
 – 동은 자주적 재정권이나 행정 및 인사권이 취약할뿐더러 관할구역의 행정책임자는 상위기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자치적 시각보다는 능률적 관점에서 행정수행을 도모함

○ 넷째, 동 행정구역의 마지막 특징은 일반목적 기관에 의해 통할되는 단위라는 것임
 – 동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등과 달리 일반목적적

기관에 의해 통할되는 단위라는 것임
- 이는 도시가 갖는 특수목적적 행정구역과 구분되는 것으로 기반행정구역이 갖는 일반목적적 기능으로서의 성격을 말해 주는 것임

제2절 창원시의 대동제 적용경과

1. 창원시의 대동제 도입배경

1) 창원시 행정구역의 변천

○ 창원시는 1980년 4월 1일자 법률 제3188호로 창원지구출장소 관할 전역과 마산시 의창동을 편입하여 18개 행정동으로 설치된 이래로,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창원시 소계동 일부 지역이 마산시에 편입되었음
- 1990년 4월 30일 창원시조례 제751호로 토월동이 신월동·사파동으로, 1991년 8월 28일에는 창원시조례 제849호로 상북동이 명서동·봉곡동으로, 반송동이 반림동·반지동으로 각각 분동(分洞)되었고 1992년 9월 1일 창원시조례 제886호로 명서동이 명서1동과 명서2동으로 분동되었음
- 1994년 9월 1일 창원시조례 제1000호에 의거 남산동이 남산동·대방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으로 동·북·대산면이 통합되어 1995년 3월 2일 창원시 條例 제150호로 동면을 동읍으로 승격하고, 의안동을 의안동과 도계동으로, 사파동을 사파동과 상남동으로 분동하여 27개 읍면동으로 시세가 크게 확장되었음
- 1983년 7월 1일에는 경남도청이 창원시로 이전하였고, 동년 9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이 이전하였으며, 1992년 5월 1일에는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이 이전하였고, 1993년 11월 29일에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관내로 이전함으로써 경남행정의 중추도시로서 발전하였음

– 1997년 7월 14일 '대동제' 실시에 따라 기존의 시지역 24개 동을 12개 대동으로 통·폐합하여 15개 읍면동으로 전환하였음

2) 창원시의 대동제 도입배경

(1) 창원시 행정환경의 변화

○ 창원시 인구는 1980년 4월 1일 시 승격 당시 12만 명이었으나, 창원공단 입주기업체의 본격적인 가동과 도시개발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유입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음

– 1987년에는 20만명, 1989년에는 30만명을, 1994년에는 40만명을 넘어섰고, 1997년 9월 10일 50만명을 초과하였으며 1999년 12월말 현재 514,935명을 기록했음

○ 인구 50만의 도시는 종래와는 다른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중추도시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됨

– 즉, 당시의 관련법률에 따르면,「지방자치법」제3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지방세법」제53조에서는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비율을 30% → 50%로 상향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10조에는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19종 45건을 특례로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관련법 규정들은 인구 50만을 기점으로 도시행정의 수요가 질·양적인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이 필요함

– 창원시에서는 그 대응방안으로 일반구의 설치보다는 대동제의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것임

(2) 광역행정의 효과적 수행

○ 기존의 동제로는 광역화되고 있는 지방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므로 동의 규모를 적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

- 이는 i) 주민복지증진이나 광역적인 지역발전도모의 주체로 새로운 동의 역할모색 ii)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및 주민생활권의 확대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 따라서 기존 동의 구역을 초월한 광역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역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동의 통폐합을 통해 기초적인 행정단위인 동의 행·재정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3) 지방분권의 적극적 수용

○ 행정환경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임

- 따라서 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기초적인 최일선의 행정단위로서의 동이 일정규모나 행·재정능력을 가지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4) 일반구제도의 한계보완

○ 일반구의 설치는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민편의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구 확대 및 공무원의 추가배치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계가 존재하고 이러한 한계보완을 위해 대동제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임

- 즉, 일반구와 동간의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청이 읍면동과 본청간의 통로역할의 수행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일반구의 설치에는 대규모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소요됨

2. 창원시의 대동제 실시과정

1) 사전준비작업

○ 창원시가 대동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서는 주민, 의회, 언론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 특히, 경희대학교 행정연구소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대동제의 업무분장 및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하였음

○ 먼저 대동제 실시에 대한 회의감을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의회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과정을 도출하였으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였음

–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선거구 조정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경청하여 최종 의결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대동제 실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주민여론조사를 통하여 대의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동장주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갈등완화를 유도하였음

– 특히, 대동제 실시직전인 97년 6월에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유관기관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였음

○ 또한 전문가 델파이(Delphi)를 고려하여 전문가 및 언론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즉, 지역의 학계와 언론계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대동제 실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표 3-2> 창원시의 대동제 준비과정

구분	일시	내용	비고
행정 관계	’96.10	대동제 실시 가능여부 검토 시장 지시	
	’96.12	대동제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시행추진 결정	
	’97.1~’97.4	대동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경희대 행정문제 연구소 주관
	’97.5	용역결과 검토 시안 마련	
	’97.5.7~5.17	경상남도 및 행정자치부 사전 조율 - 도지사, 행정자치부 장·차관 보고 - 도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지원·격려 약속	도입방안 설명 및 정원유지 건의
	’97.5.27	시 확대간부회의 개최로 대동제 도입 결의 - 실과장·읍면동장 이상 전간부 참석 - 대동제 적극지지 및 도입 결의	
대 의회 관계	’97.5.26	의장단 사전협의	
	’97.5.27	시의회 보고 및 대동제 시행안 발표	
	’97.5.27~6.25	시의회의 대응 - 찬성과 반대여론 비등, 내무위원회 중심으로 시민여론 청취 및 의회 조정안 마련 작업 착수 - 의원 개개인의 의견차이로 조정안 마련 실패	
	’97.6.26	내무위원회에서 찬성 의결	재적 12명 중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3표
	’97.6.28	본회의로 통과	참석의원 36명 전원 찬성
대 주민 관계	’97.5.30~6.2	동장 주관 주민설명회	
	’97.6.2~6.5	주민여론조사 실시	찬성 86.4%, 반대 15.6%
	’97.6.9~6.13	시 주관 주민설명회 - 통합대상지역 주민 2,400명 - 대동제 계획의 설명, 질의응답, 공감대 확산	
	’97.6.12	대동제 도입 공청회	전반적으로 찬성 분위기가 압도적
대 언론/ 사회 단체	’97.5.27	기자회견	
	’97.6.3	언론기관 및 학계 중진초청 간담회 - 지방언론사의 보도편집국장 - 학계의 관련 전문가 등 11명 초청	
	’97.6.10	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 - 관내 주요기관, 사회단체장 40명 초청	

2) 대동제 시행준비작업 및 대동제 시행

○ 전술한 대동제 실시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7년 7월 14일 자로 창원시는 대동제를 시행하게 되었음

– 동 기간에 창원시가 주관한 행정적인 시행준비 작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3> 대동제 시행준비작업 및 시행

항목	일시	내용	비고
대동제 시행준비 작업	‘97.6.20.~ 7.13.	• 관련공부의 정리 : 주민등록 등 관련공부 710천 매 • 인사조치 및 사무실 정리 • 사무실 정리 : ‘97.7.13~7.14 • 주민 홍보 - 임시반상회 개최 : 4,144개 반 • 안내전단전세대배포 : 14만 매	
대동제 시행	‘97.7.14.	• 대동제 출범식 : 실내체육관 • 동별 개소식 : 12개 등	

3) 대동제 도입관련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등 결과

○ 창원시는 대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 주민 설명회를 주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총인원 3,428명이 참석한 가운데 41회 개최하였음

– 특히, 유관기관장 설명회와 학계 및 언론계, 사회단체장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서 대동제 실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간주됨

<표 3-4> 주민설명회 개최현황

일시	내용	참석인원 및 개최회수
1997.5.29	유관기관 설명회	‣ 1회 개최, 참석인원 34명
1997.5.30. ~6.3	동장주관 주민설명회	‣ 26회 개최, 참석인원 2,612명
1997.6.3. ~6.11	시주관 주민설명회	‣ 10회 개최, 참석인원 329명
1997.6.4	학계 및 언론중진 설명회	‣ 1회 개최, 참석인원 8명
1997.6.5	도의원 초청 설명회	‣ 1회 개최, 참석인원 5명
1997.6.9	사회단체장 초청설명회	‣ 1회 개최, 참석인원 40명
1997.6.12	시민공청회	‣ 1회 개최, 참석인원 400명

○ 창원시는 대동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주민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다수의 주민이 대동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 주민설문조사 결과

대동	기존동	찬성율(%)
의창동	의안동	90.0
	동정동	90.7
	소계동	85.3
팔룡동	팔룡동	89.6
	대원동	85.5
명곡동	도계동	89.4
	명서1동	90.4
	명서2동	88.4
봉림동	봉곡동	90.8
	사림동	81.8
반송동	반림동	91.5
	반지동	86.7
중앙동	내동	77.8
	중앙동	92.5

대동	기존동	찬성율(%)
용지동	용호동	90.1
	신월동	79.0
상남동	상남동	91.0
사파동	사파동	82.9
	대방동	85.0
가음정동	가음정동	84.7
	남산동	78.3
성주동	성주동	94.4
웅남동	신촌동	71.4
	삼귀동	69.2

3. 창원시의 대동제 실시현황

1) 대동의 구역획정

○ 창원시의 대동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24개 동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12개의 대동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하였음

– 12개의 확정된 동은 의창동, 팔룡동, 명곡동, 봉림동, 반송동, 중앙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인구와 면적은 다음과 같음

<표 3-6> 대동획정 구역현황

도명칭		통합대상지역	인구수 (명)	면적 (㎢)	기초의회 의원수(명)	비고
12개 동		24개동	458,895	122.77	29(△5)	
1	의창동	의안동+동정동+소계동	41,250	8.84	3	
2	팔룡동	팔룡동+대원동	31,775	13.85	2	
3	명곡동	도계동+명서1동+명서2동	63,044	6.62	4	
4	봉림동	봉곡동+사림동	35,705	12.26	2(△1)	
5	반송동	반림동+반지동	50,034	2.01	3(△1)	
6	중앙동	내동+중앙동 -상남상업지역	26,408	4.72	2	
7	용지동	용호동+신월동 -상남상업지역	40,844	4.56	3	

도명칭		통합대상지역	인구수 (명)	면적 (㎢)	기초의회 의원수(명)	비고
8	상남동	상남동+상남상업지역	36,794	0.97	2	
9	사파동	사파동+대방동	56,416	6.45	3(△1)	
10	가음정동	가음정동+남산동 -남산동의 대로남쪽	51,646	3.48	3(△1)	
11	성주동	성주동+남산동의 대로남쪽	11,210	24.17	1	
12	웅남동	신촌동+삼귀동	13,769	39.84	1(△1)	

2) 대동의 관장기능

○ 대동제의 실시로 인하여 확대된 대동의 주요 관장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구청과 기존 동간의 중간적 기능과 사무배분, 둘째,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 즉 지역 Community Center로서의 역할, 셋째, 시민통합과 지역정체성 확립의 기초단위, 넷째,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의 1차적 처리기관, 다섯째, 인·허가 사무 및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기관, 여섯째, 시·도 및 국가사무 처리를 위한 하부행정기관, 일곱째, 조직운영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확대된 자주기관 등임

○ 한편, 대동제 실시에 따른 본청과 동간의 사무의 재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주민편익극대의 원칙과 권한 및 책임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본청과 대동의 사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후, 추가위임 90종과 중앙정부·도의 승인이 필요한 권한의 재위임사무는 절차완료 후 14종의 사무를 위임토록 계획하였음

3) 대동의 조직 및 인력

○ 대동제 실시이후 창원시의 읍·면·동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98. 1. 1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총수는 477명으로 이 중에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377명임

- 이는 대동제 실시이전 412명에서 35명이 감축된 규모로 이중에서 민원센터 근무 공무원 수는 70명으로 동 근무 공무원의 19%에 해당됨
- 민원센터별 평균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파 민원센터가 8명으로 최고이고 4명이 근무하는 삼귀 민원센터까지 분포되어 있음

○ 한편, 대동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성주동, 웅남동 등 인구 2만 미만 동의 조직은 동장, 사무장, 총무계, 시민계, 민원센터로 구성되며, 이중 민원센터는 삼귀동에 1개소가 설치되었고
- 둘째, 인구 2만 이상의 동은 전체 10개 동이 이에 해당되며, 동 조직은 동장, 사무장, 총무계, 시민계, 120기동대, 민원센터로 구성되며, 민원센터가 설치된 동은 의안동, 소계동, 대원동, 명서1동, 명서2동, 사림동, 반지동, 내동, 신월동, 사파동, 가음정동 등 11개소가 이에 해당되나, 민원센터는 전자주민카드제 실시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계획하였음

<표 3-7> 대동제 이후 창원시 읍면동 공무원 현황('98.1.1 현재)

구분	인구수 (명)	공무원수(명)					민원센터 근무인원 (명)	공무원 증감	비고 (민원센터)
		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일용			
계	503,459	477	383	17	40	37	70	△58	
동읍	21,800	37	31	1	2	3		0	
북면	12,203	32	26	1	2	3		0	
대산면	10,561	31	23	1	3	4		0	
의창동	41,250	36	28	1	4	3	13	△9	의안동: 7명 소계동: 6명
팔룡동	31,775	35	30	1	2	2	6	0	
명곡동	63,044	42	31	2	4	4	13	△15	명서1동: 7명 명서2동: 6명

구분	인구수 (명)	공무원수(명)					민원센터 근무인원 (명)	공무원 증감	비고 (민원 센터)
		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일용			
봉림동	35,705	36	29	1	3	3	5	2	
반송동	50,034	31	25	2	2	3	5	△13	
중앙동	26,408	30	26	1	2	2	4	△3	
용지동	40,844	31	25	1	2	6	6	△8	
상남동	36,794	25	23		1	1		4	
사파동	56,416	37	30	2	3	2	8	△10	
가음정동	11,210	34	25	1	5	3	6	△10	
성주동	13,769	15	13		1	1		7	
웅남동		25	18	2	3	2	4	△3	

4. 창원시의 대동제 전후 비교

○ 대동제 시행('97. 7. 14)에 따른 제반현황을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즉, 시행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24개 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관장기능은 단순집행 기능에서 공동체의 정책기능을 부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동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동별로 인구기준을 37,7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면적도 평균 2배로 증가되었으며, 동별로 평균 공무원 수가 1.6배 증가한 30명 내외로 확대되었음

<표 3-8> 대동제 시행 전후비교

항목	변경 내용	비고
시행지역	• 농촌지역(3개 읍·면)을 제외한 도시지역 24개 동 • 인구 5만 이상 3개 동, 3~5만 6개 동, 3만 이하 3개 동 • 인구, 면적, 상업시설 등 행정수요와 생활권, 과거 분동지역 등	
기능	• 단순집행기능 → 공동체의 정책기능 + 집행기능	
동 수	• 24개 동 → 12개 동 (12개 민원센터)	
평균 인구수(명/동)	• 18,850명 → 37,700명	
평균 면적(㎢/동)	• 5.32㎢ → 10.65㎢	
평균 공무원 수	• 17명 → 30명	

제3절 대동제의 실시논거 분석

1. 실시논거의 분석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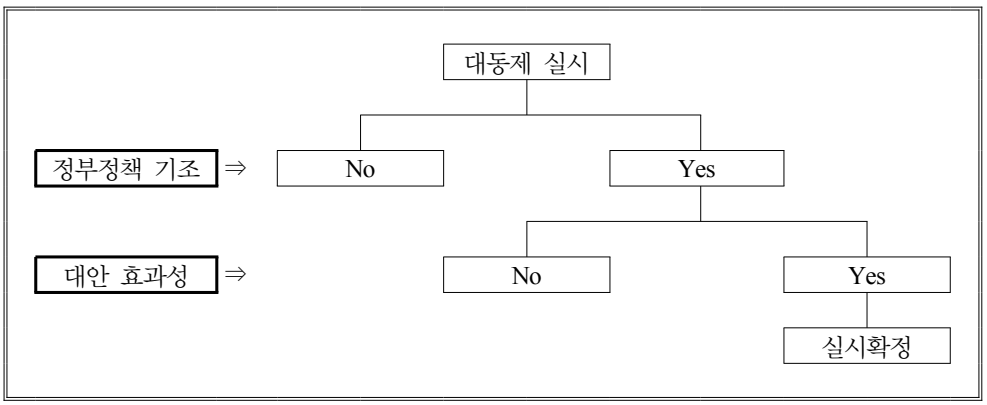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대동제를 실시하기 위한 논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는 정부정책의 기조에 대한 분석이고, 부가적으로 대안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그것임

○ 대동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구와 더불어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의 하나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함
-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일반구가 아닌 대동제를 선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의존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일반구가 아닌 대동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실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대동제의 대안적 실효성이 확보될 경우 정부정책의 수용성이 광범위하게 제고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 전술한 논의에 따라서 대동제의 실시논거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안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함
- 즉,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대동제의 실시가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정부정책의 기조와 대안의 효과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그림 3-3> 대동제 실시논거의 분석구조



2. 정부정책의 기조분석

1) 지방행정기관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

○ 정부는 현행의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일반구를 획일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일반구를 획일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중층적 행정구조로 인하여 기관유지 비용이나 처리기관의 혼선 및 신속한 의사결정의 곤란 등의 비효율적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 따라서, 획일적인 일반구의 설치보다 지역여건 및 신규 행정수요에 맞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관(洞) 모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복지 및 안전 중심의 주민 대응능력 강화

○ 복지서비스에도 규모경제의 개념을 적용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동제의 실시가 필요함

– 복지서비스 담당공무원 1인에 집중되는 깔대기 현상을 극복하고, 다수의 팀제에 의해 상호 연계된 서비스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임

– 즉, 각기 다른 업무순기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민원창구에서 기다리는 시혜적 복지에서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를 창출하는 것임

【경찰사례】
▸(2004년)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구대로 개편
* 2~3개 파출소 통합, 정원 40~60명, 長 경위→경감, 치안센터 활용
▸(2009년) 농촌지역 중심으로 파출소 부활, 서민밀착형 치안수요 대처

○ 신도시의 고층 아파트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에 따른 선도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대동제의 실시가 필요함
– 즉, 완벽한 도시기반시설로 전통적인 행정수요는 퇴색(가로등, 하수도 등)하고, 베드타운화에 따른 젊은 층의 유입, 맞벌이의 증가로 보육 등 신규 복지수요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선도적 대응이 요청된다는 것임

○ 대동제의 실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능의 전진 배치로 주민중심의 행정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임
– 대동제의 실시로 시 본청은 도시미관, 도시계획, 교통정책, 지역경제 등 시정 기획기능에 집중하고, 대동은 재난·재해의 사전점검 및 신속대응과 자율방범 등으로 안전관리의 능력을 배양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집행으로 적시성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임

3. 대안 효과성 분석

1) 기존논의 분석

(1) 금창호·권오철 연구(2008)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로 측정하여 대안별 효과를 분석함

– 투입요소의 분석은 기능배분의 명료성, 인력규모의 적정성, 사무처리 절차의 간소성 등의 분석지표로 그리고 산출요소의 분석은 행정기관 분포도 및 적정기능 제공도 등의 분석지표로 측정함

<표 3-9> 하부행정기관 효과분석 방법

구분	분석항목	분석지표
투입요소	기능배분	- 기능배분의 명료성
	인력규모	- 인력규모의 적정성
	사무처리	- 사무처리절차의 간소성
산출요소	행정기관 접근성	- 행정기관 분포도
	서비스이용 편의성	- 적정기능 제공도

○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와 대동제를 대상으로 운영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투입요소 측면에서는 기능배분, 인력규모 및 사무처리 등에서 대동제가 일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동제가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제시되고

– 산출요소 측면에서는 행정기관 접근성 및 서비스이용 편의성 모두에서 일반구가 대동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반구가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제시됨

<표 3-10> 하부행정기관의 효과성 분석결과

구분		분석내용
투입요소	기능배분	■ 유지기능 및 사업기능 기준 - 유지기능은 일반구 및 대동제 공히 중복현상 발생, 사업기능은 일반구만 중복현상 발생 - 기능배분은 대동제가 일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확
	인력규모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기준 - 일반구 평균 800명, 대동제 평균 1,523명 - 일반구의 공무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구분		분석내용
	사무처리	■ 사무처리유형에 따른 거래비용 기준 - 일반구는 분담 및 경유 유형, 대동제는 분담유형 구조 - 일반구의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큼
산출요소	행정기관 접근성	■ 평균면적 기준 - 일반구 평균은 8.7㎢, 대동제 평균은 19.5㎢ - 행정기관의 접근성은 일반구가 대동제에 비하여 양호함
	서비스이용 편의성	■ 서비스의 종류 및 특성 기준 - 종류기준은 일반구 및 대동제 공히 포괄적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특성기준은 일반구는 집행 및 민원서비스, 대동제는 민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 편의성은 일반구가 대동제에 비하여 양호함

(2) 최영출 연구(2008)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을 개선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일반구를 대상으로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경험적 측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함

– 주민 편의성의 측정은 주민접근성과 주민의 현장서비스 지원,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그리고 행정 효율성의 측정은 예산지출액과 행정거래비용, 기능중복, 청사 신축 및 유지비, 선거구 증감 등을 측정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표 3-11> 일반구의 실태측정 방법

구분	분석내용
주민 편의성	‣ 주민 접근성
	‣ 주민의 현장서비스 지원
	‣ 주민에 대한 책임성
행정 효율성	‣ 예산지출액
	‣ 행정거래비용
	‣ 기능중복
	‣ 청사 신축 및 유지비
	‣ 선거구 증감

○ 일반구를 대상으로 한 운영실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한계가 도출된 것으로 나타남

– 주민 편의성에서는 일반구의 행정구역 과다로 주민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동 기능전환에 따라 현정서비스 지원기능이 미흡하며, 본청과 기능중복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 행정 효율성에서도 예산 기출액의 증가와 계층경유로 문서처리시간이 길어지고, 기관유지업무의 중복현상이 발생되며, 청사의 신축 및 유지비가 증가되고, 선거구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일반구 실태분석 결과

구분		분석결과
주민 편의성	주민 접근성	‣ 일반구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주민의 현장서비스 지원	‣ 동 기능전환으로 동의 현장서비스 지원기능 취약
	주민에 대한 책임성	‣ 기능중복으로 책임성 모호
행정 효율성	예산지출액	‣ 일반구 설치시 1인당 예산액 증가
	행정거래비용	‣ 계층경유로 문서처리시간 증가
	기능중복	‣ 기획, 예산, 인사, 회계 등 기관유지업무 중복
	청사 신축 및 유지비	‣ 청사 신축 및 유지비용 증가
	선거구 증감	‣ 일반구의 설치 및 분구 시 선거구 증가

동 기능전환 전	동 기능전환 후
1. 민원기능 - 제증명발급, 신고민원처리 2.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 주민등록, 인감관리 - 민방위, 재난관리 3. 사회복지기능 -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 - 노인, 부녀, 아동복지 4. 세원관리, 고지서 전달 - 지방세, 과태료 5. 단속 규제 - 주차장, 불법건축물 단속 6. 민간협력 - 적십자회비 모금	<읍면동 사무소> 1. 민원기능 - 제증명발급, 신고민원처리 2.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 주민등록, 인감관리 3. 사회복지기능 -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 4-8은 시군구 이관 <주민자치센터> 1. 주민편익기능 - 회의장, 예식장, 놀이방, 탁아소 등 2. 문화활동지원

- 자생단체 관리 등 7. 본청 및 특별행정기관 보조기능 - 환경, 위생 - 산업, 도시, 건설 - 건축, 통계, 병무 8. 기관유지 - 예산, 청사관리, 서무	- 전시회, 취미교실, 청소년 센터 3. 여가활동 조성 - 동호회,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3) 김병국·하현상 연구(2012)

○ 창원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기준으로 일반구와 대동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음

– 효과성의 분석항목으로는 행정 효율성에서 기능배분과 인력 및 조직규모, 사무처리 절차, 사무 및 시설관리 비용을 적용하고, 주민 편의성에서는 행정기관 접근성과 민원서비스 공급 적정성, 주민참여 용이성, 시민의 지역 정체성 등을 적용하고 있음

<표 3-13> 대도시 일반구 운영실태 분석방법

요소	분석 항목(주요 분석 지표)	분석 방법
행정 효율성	기능배분(기능배분 필요성/적절성)	‣ 법령 및 행정자료 조사 ‣ 관련 통계조사 ‣ 공무원·주민 인식조사
	인력 및 조직규모(규모의 적정성)	
	사무처리 절차(간소성)	
	사무 및 시설관리 비용(관련 예산)	
주민 편의성	행정기관 접근성(구청/동사무소 접근성)	‣ 법령 및 행정자료 조사 ‣ 관련 통계조사 ‣ 주민·공무원 인식조사
	민원서비스 공급 적정성(서비스 이용 용이성 정도)	
	주민참여 용이성(참여의 정도)	
	시민의 지역 정체성(준거집단)	

○ 창원시와 용인시를 사례로 일반구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 (구)창원시의 대동제와 통합 창원시의 일반구제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

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대동제가 일반구제보다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는 양자의 비교우위를 판단하기가 곤란함

- 용인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하부행정기관인 구와 동의 업무처리 완결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는 본청과 구청보다는 동사무소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이 높고 또한 1차적인 민원 접촉기관으로 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구청보다 동사무소의 기능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4> 하부행정기관 운영실태 분석결과

구분		창원시 비교분석	용인시 진단분석
행정 효율성	기능배분	대동제 유리	-본청-구청-동간 업무중복 및 책임소재 불분명한 업무존치
	인력조직규모	대동제 유리	-구청과 동사무소의 인력 부족
	사무처리절차	대동제 유리	-3계층간 연계업무의 복잡성 야기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 완결성 부족
	사무시설관리비용	대동제 유리	-예산의 본청 집권성
주민 편의성	행정기관 접근성	일반구제 유리	-일반구제 하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없고, 심리적으로 동 접근성 양호
	서비스공급 적정성	일반구제 다소 유리	-본청-구청-동간 민원업무 내용 혼동
	주민참여 용이성	대동제(오프라인) 유리 일반구제(온라인) 유리	-동사무소 중심의 행정접점 -참여의 공간적 범위중심이 동 사무소 활발
	시민 지역정체성	차별성 없음	-구시가지는 시민 정체성 강조 -신시가지는 구민/동민 정체성 강조

(4) 남재걸·김태운 연구(2013)

○ 창원시의 대동제와 일반구를 대상으로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비교분석하고 있음

- 행정 효율성은 기능배분 적정성과 인력 및 조직규모 적정성, 사무처리

절차 간소성, 비용 및 시설관리 효율성 등으로 측정하고, 주민 편의성은 물리·심리적 기관접근성과 서비스 기관 식별성, 주민참여의 용이성, 시민의 지역 정체성 정도 등으로 측정하고 있음

<표 3-15> 일반구와 대동제의 효과성 분석방법

구분	분석내용
행정 효율성	‣ 기능배분 적정성
	‣ 인력 조직규모 적정성
	‣ 사무처리절차 간소성
	‣ 비용 및 시설관리 효율성
주민 편의성	‣ 물리·심리적 기관접근성
	‣ 서비스 기관 식별성
	‣ 주민참여 용이성
	‣ 시민의 지역 정체성 정도

○ 창원시의 대동제와 일반구를 대상으로 하부행정기관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행정 효율성에서는 일반구의 설치로 인력의 증가와 사무처리의 복잡화, 관리비용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계층간 기능배분도 대동제에 비하여 불명확하게 나타나고

– 주민 편의성에서는 일반구의 설치로 심리적 접근성이 저하되고, 기관 식별성의 혼란이 초래되며, 주민참여의 상대적 곤란과 주민 정체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표 3-16> 일반구와 대동제의 효과성 분석결과

구분		분석내용
행정 효율성	기능배분 적정성	‣ 대동제의 기능배분이 상대적으로 명확
	인력 조직규모 적정성	‣ 일반구가 투입인력의 증가 초래
	사무처리절차 간소성	‣ 일반구가 경유과정 증가로 사무처리절차 복잡화
	비용 및 시설관리 효율성	‣ 일반구가 관리비용의 상대적 증가 초래
주민 편의성	물리·심리적 기관접근성	‣ 일반구 설치로 물리적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심리적 접근성은 대동제가 우위
	서비스 기관 식별성	‣ 일반구 설치로 기관 식별성 혼란 초래
	주민참여 용이성	‣ 일반구 설치로 주민참여의 상대적 저하
	시민의 지역 정체성 정도	‣ 대동제가 상대적으로 주민 정체성에 기여

2) 실증분석

(1) 분석의 목적

○ 하부행정기관으로 일반구가 아닌 대동제가 정책대안으로 채택 및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동제의 상대적 비교우위가 입증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공급효과를 사례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분석대상으로는 유일하게 대동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를 중심으로 일반구와 대동제에 대한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함

– 통합이전의 舊 창원시는 1997년부터 대동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2010년 7월 마산시 및 진해시가 구 창원시와 함께 통합되면서 일반구로 전환하였음

– 대동제와 일반구를 모두 경험한 경남 창원시에 대한 분석은 대도시 행정계층 적정성 분석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대동제와 일반구제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창원시 의창구와 의창동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의창동 지역은 구 창원시가 대동제의 모델로 제시한 지역으로 일반구 실시에 따른 변화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2) 분석의 틀

○ 다음과 같은 변수를 통하여 대동제와 일반구 제도와 같은 행정체제를 비교분석하고자 함

– 행정체제의 효율성

・ 지역주민 1인당 행정구 및 동사무소 공무원의 수

・ 지역주민 1인당 행정구 및 동사무소 경상경비(공무원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경비)

– 행정서비스의 단위비용

・ 일반구와 동사무소가 지출하는 주요 행정서비스 주민 1인당 단위비용 추정

– 사무절차의 간소화

–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 행정구 및 동사무소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3) 효과성 분석내용

① 행정체제의 효율성

○ 대동제에서 일반구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행정체계 간의 비교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행정서비스 공급의 적정성은 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라는 규모의 비교, ② 대동제에서 일반구제의 변화에 따른 인력, 조직의 변화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창원시 통합 전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 통합 당시 구 창원시 전체 공무원 수는 1,491명이었으며 이 중 본청이 715명, 읍면동 사무소(현 의창구와 성산구 지역)에 373명이었음

<표 3-17> 공무원 대비 주민 수 비교

구분	전체 공무원 수	시 본청	구청	읍면동	주민 수	구청·읍면동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구 창원시	1,491	715(48%)	-	373(25%)	502,727	1,348
통합 창원시	3,863	884(23%)	908(24%)	942(24%)	1,090,181	589

○ 통합 후 통합 창원시의 전체 공무원 수는 3,863명이며 이중 본청이 884명, 구청이 908명, 읍면동 사무소가 942명임

– 대동제 운영 시에는 본청 48%, 읍면동 25%로 인력을 배분하였으나, 일반구제를 실시함에 따라 본청 23%, 구청 24%, 읍면동 24%로 배분하였음

– 이러한 배분은 시 본청의 민원사무를 모두 구청으로 이관하고 시는 정책업무와 통합·조정업무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였음

○ 민원서비스 제공과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구청과 읍면동을 중심으로 공무원 대비 주민 수를 비교하면 일반구제 시행 이후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589명으로 대동제 시행시기의 주민 수인 1,348명의 4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통합 후 창원시는 기존 읍면동 정원은 그 골격을 유지하고 폐지되는 구 마산시청, 구 창원시청, 구 진해시청의 정원을 통합 시 본청과 각 구청(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 및 진해구)으로 분산하였음

– 이러한 분산 과정에서 창원시 본청의 인력을 기존의 전체 시 인구의 48%에서 23%로 25% 감축한 것은 이러한 일반구제로 전환에 따라

본청 기능의 구청이관에 따른 것임

- 따라서 구청 공무원의 증가는 통합 효과라기보다는 대동제에서 일반구제로의 전환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폐지된 3개 시청의 인력을 5개 구청에 분산할 때에 구 창원시 지역인 의창구와 성산구에 배치되는 정원의 수와, 통합되지 않고 구 창원시가 일반구제로 전환하였을 때에 의창구와 성산구에 배치되는 정원의 수는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 창원시만 일반구제를 실시했을 때를 보면, 본청이 343명(23%), 2개 구청이 각 179명으로 총 358명(24%), 읍면동이 369명(25%)으로 나타남

- 따라서 통합 후 현재의 5개 구청의 평균 인력이 182명이므로 구 창원시가 일반구제를 실시할 경우와 통합 창원시의 일반구제 전환에 따른 한 개 구청의 인력은 각각 179명과 182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 창원시 통합전후 동 인력·조직 규모비교

○ 구 창원시의 대동제와 현재의 일반구제에서의 인력·조직 규모의 비교는 동일한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따라서 인력과 조직규모의 변화 정도를 통하여 행정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대동제에서 일반구제로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의 인력 변동은 미미하였음

- 의창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인력은 대동제 운영시 총 214명에서 일반구제로 변화하면서 5명이 감소한 209명임
- 동사무소 직원들은 업무 내용은 동일하고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불만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음

<표 3-18> 창원시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의창구 읍·면·동 인력비교

구분	계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팔용동	명곡동	봉림동	용지동
대동제 (`10.1월 기준)	214	31	27	23	27	30	31	23	22
일반구 (`12.1월 기준)	209	31	27	22	26	29	31	22	21

○ 동사무소 인력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일반구제로 전환하면서 구청(의창구) 하나가 추가 설치되면서 의창구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의창구의 경우 10개과 22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사무소의 미미한 인력 변동과 구청의 추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와 구청이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음

– 결국 주민 1인당 공무원수가 많고 동시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적으면 행정체제의 효율성이 많다고 가정할 경우, 대동제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움

② 전환비용 비교분석

○ 대동제에서 일반구제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은 행정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의창구청의 2011년도 본예산은 총 23,973백만 원이며 이중 대부분은 기관을 운영하는 필수 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임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인건비(비정규 계약직 제외)로 18,321백만 원(76.4%), 청사관리비용이 3,464백만 원(14.4%),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933백만 원(3.9%)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의창동사무소의 예산은 2010년 대동제 당시에는 1,241백만 원이었으며, 2011년 일반구 실시에 따라 1,020백만 원으로 221백만 원이 축소되었음
- 축소된 분야는 소규모주민 건의사업으로 기존에 동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구청에서 시행됨에 따라 160백만 원이 삭감되었고, 동민화합행사와 정월대보름 행사 등 동을 중심으로 실시되던 주요 행사들도 구청중심으로 실시되면서 8백만 원이 삭감되었음

○ 일반구제 실시에 따라 청사관리 비용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등의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구청 중심의 행사진행으로 절약되는 측면도 나타났음
- 사무·시설비용 측면에서는 대동제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구제 실시에 따라 각 동별 행사비가 절약되는 측면도 발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일반구제 실시에 따른 관리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③ 행정서비스의 단위비용 추정

○ 2007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을 추정한 연구가 있음
- 당시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던 창원시 대동과 일반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안산시의 구를 비교하여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을 산출하였고, 행정서비스 단위비용을 비교할 경우, 안산시의 경우가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의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안산시의 행정구가 주민을 위한 1인당 단위비용이 창원시 대동보다 많이 지출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창원시 웅남동의 경우 안산시의 상록구와 단원구보다 많은 149,000원을 지출하고 있어 반드시 행정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임

<표 3-19> 일반구와 대동제의 행정서비스 단위비용 비교

구분	일반구			대동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주민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	113,054원	113,914원	112,138원	77,466원	149,000원	35,000원

○ 통합 창원시가 다시 일반구제를 적용해서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동제를 운영했을 경우와 다시 일반구제를 운용했을 경우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은 여의치 않아 일단 2007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합 당시의 값을 참고하여 결과를 추정하고자 함

–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에서 일반구제와 대동제를 운영했을 때 대동제는 일반구제보다 약 1.46배의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구제를 적용한다면 이를 당시 대동제의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인 77,466원의 1.46배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계산하면, 약 113,054원의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동제 관련 비용 및 일반구제 비용을 최근의 2013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매년 물가상승률 3%를 가정)

<표 3-20> 창원시 일반구 및 대동제의 행정서비스 비용비교

구분	일반구	대동
	평균	평균
주민1인당 행정서비스비용	143,213원	98,132원

④ 사무절차의 간소화 정도

○ 대동제와 일반구의 사무처리 절차의 비교분석은 행정계층 간 경유기관과 같은 비효율적인 절차의 존재 정도를 판단하는 것임

○ 일반구의 사무처리는 행정계층의 연계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행정계층 간 연계가 불필요한 유형으로 일반구에서 완결되는 사무처리인 기관유지사무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등이 해당됨

– 둘째, 행정계층 간 연계가 필요한 유형으로 본청과 일반구 및 읍면동의 행정계층 간 분담 또는 경유되는 사무처리임

<표 3-21> 일반구 사무처리 유형

구분	내용(예시)
분담유형	■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관리 - 접수(동)→실태조사(일반구)→책정(본청)
경유유형	■ 예산 및 정책 등 보고자료 - 본청(지수)→구청(전달 및 취합)→동(작성)

○ 창원시는 일반구 실시에 따라 행정계층 간 연계가 필요한 사무처리는 행정계층에 따른 거래비용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상기의 현상은 인력과 조직측면에서 지적되었듯이 구청이 생기면서 본청의 인력대비 업무량이 줄어들었다는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임

– 일반구제 실시는 하부 행정기관이 하나 더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업무처리에서 불필요한 경유절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업무처리의 복잡성도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동제의 경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 기능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최소한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본청과의 협의업무 등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그러나 일반구제가 실시되면서 본청 업무의 일부를 구청과 분담하면서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할 업무가 증가하면서 사무처리절차에서 복잡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⑤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 행정구와 대동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아직 창원시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 지방행정 풍토상 동이 주관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행하지 않는 관례에서 보면 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은 무의미함

○ 현재 지방행정서비스헌장을 양 시가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측정하는 대상기준은 동과 행정구가 아닌 시 단위이므로 대동제와 행정구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족도는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 상기에서 논의한 행정체제의 효율성, 행정서비스의 단위비용,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 3개의 항목과 4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일반구제와 대동제를 비교할 경우, 전체적으로 대동제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문가 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도 대동제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표 3-22> 일반구와 대동제의 효과성 분석결과

구분		일반구	대동제
행정체제 효율성	주민1인당 공무원수		미세한 우세
	주민1인당 경상경비		미세한 우세
행정서비스 단위비용	주민1인당 단위비용	미세한 우세	
지역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	/

4. 대동제 실시논거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대동제의 실시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전술한 정부정책의 기조와 대안의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의 기조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대동제가 보유하고 있는 효과도 충분하다는 것임

○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르면, 복지 및 안전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효율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음

– 이러한 요청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하부행정기관의 현지성과 집중성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반구가 아닌 대동제를 선택한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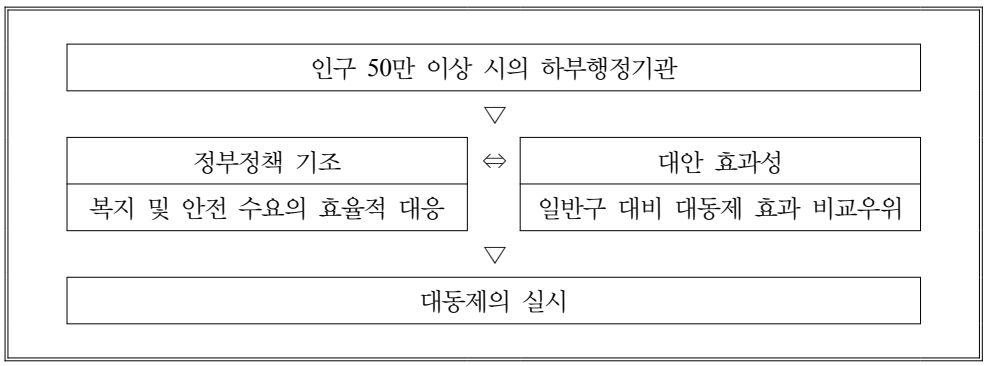
○ 한편, 기존의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일반구에 비하여 대동제의 대안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전술한 기존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효과성 분석의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일반구에 비하여 대동제가 비교 우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부 항목에서 일반구가 대동제에 비하여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기본적으로는 창원시의 대동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이는 동의 규모와 관장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에 연유하고 있음

– 즉, 대동제의 모형을 동의 규모와 관장기능 측면에서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전반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간주됨

<그림 3-4> 대동제의 실시논거





제4장
대동제의 실시방안 설계

제1절 검토요소의 도출
제2절 대동제 실시모형의 설계
제3절 광역(廣域)동 모형의 설계
제4절 중심(中心)동 모형의 설계
제5절 지원적 검토요소의 설계

제4장 대동제의 실시방안 설계

제1절 검토요소의 도출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대동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용에 따른 구비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즉, 하부행정기관인 대동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치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임

○ 대동제도 일반구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특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이기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적정하게 구비될 필요가 있음
 – 즉, 관할구역 내에서 특정의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조적 요소와 운영적 요소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일반구를 대체하는 일종의 개혁조치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지원적 요소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대동제의 실시를 위한 검토요소의 각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구조적 검토요소에는 실시모형과 인구기준 및 면적기준 등이, 운영적 검토요소에는 관장기능, 기구편제, 인력규모 등이, 지원적 검토요소에는 기준정원제, 지방교부세, 청사활용 등이 해당됨
 – 이에 더하여 대동제의 본격실시를 위한 추진시기, 관련법제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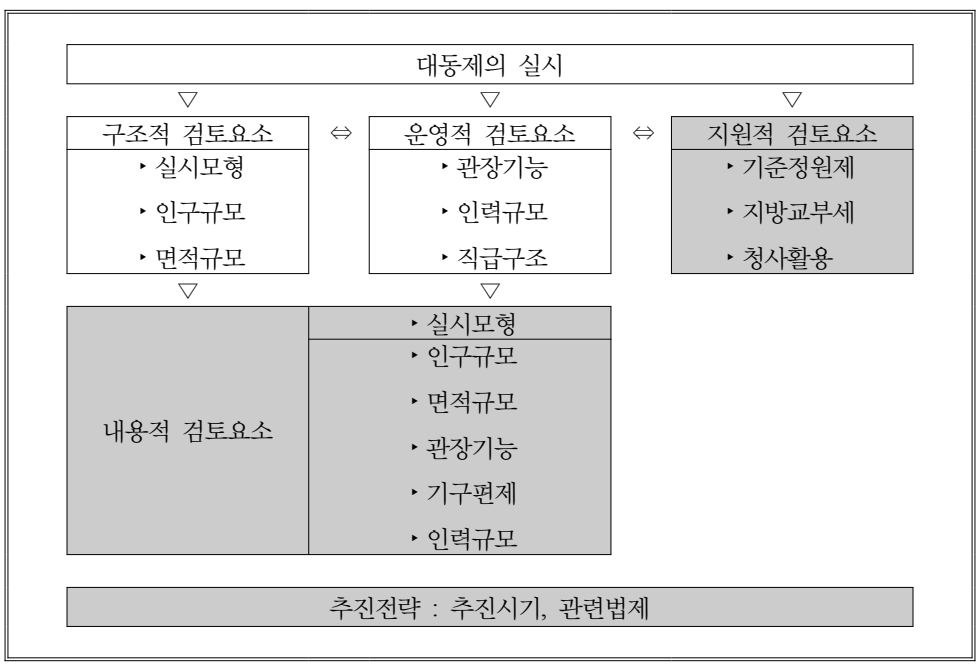
○ 다만, 실시모형을 제외한 구조적 검토요소와 운영적 검토요소는 기본적으로 실시모형에 따라서 가변적인 충족성을 가지게 됨

– 즉, 대동제의 실시모형에 따라서 구조적 잔여 검토요소와 운영적 검토요소의 내용이 달리지는 종속적 변수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대동제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별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함

– 실시모형을 중심으로 구조적 검토요소와 운영적 검토요소를 통합하여 대안의 내용적 검토요소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적 검토요소 및 추진전략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도출함

<그림 4-1> 대안설계의 검토내용



제2절 대동제 실시모형의 설계

1. 도출논거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대동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동제의 실시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대동제의 실시모형은 대동제의 대안설계에 필요한 제반요소들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전제요건이기 때문임

○ 대동제의 실시는 전술한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구의 한계와 특정의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것임
- 현행의 일반구가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증가하는 안전 및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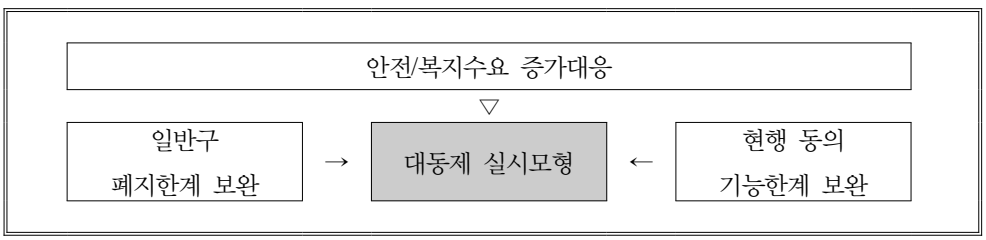
○ 따라서 대동제의 실시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즉, 대동제가 구비할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구의 폐지를 통한 단일 행정계층의 확보와 현행의 동보다 규모의 확대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임

○ 우선, 일반구의 폐지를 통한 단일 행정계층의 확보라는 점에서 대동제 실시모형의 설계논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대동제는 기본적으로 일반구의 폐지를 전제로 검토되는 대안이므로 일반구 설치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행정 2계층이 단일계층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저하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모형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임

○ 다음, 현행의 동보다 규모의 확대라는 점에서 대동제 실시모형의 설계논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동의 관장기능은 현행의 동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되어 있으므로 동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일반구를 폐지할 경우 다수의 일반구 관장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동제의 실시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림 4-2> 대동제 실시모형의 설계논거



2. 기존연구 검토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이 여타의 자치제도에 비하여 정책적 수요도 많지 않았고, 나아가 학문적 논쟁도 크지 않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음

○ 기존의 연구 가운데 일반구의 폐지를 전제로 대동제를 도입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2개 연구(금창호·권오철, 2008; 김병국·하현상, 2012)에 불과함

– 그 외의 연구들도 대동제를 대안의 하나로 언급은 하고 있으나(최영출, 2008; 남재걸·김태운, 2013),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대동제를 제시하고 있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금창호·권오철(2008)의 연구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개편대안으로 일반구 한계보완모형과 대동제 한계보완모형(中心

洞) 및 신규모형(廣域洞)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동제에 관한 대안은 중심(中心)동과 광역(廣域)동이 해당됨

- 김병국·하현상(2012)의 연구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개편대안으로 일반구 보완모형과 준자치구 모형, 광역(廣域)동 모형 및 중심(中心)동 등 4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동제에 관한 대안은 전술한 금창호·권오철의 연구와 동일하게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을 제시하고 있음

<표 4-1> 대동제 모형에 관한 기존연구

구분	내용
금창호·권오철(2008)	‣ 광역(廣域)동, 중심(中心)동
김병국 ‣ 하현상(2012)	‣ 광역(廣域)동, 중심(中心)동
최영출(2008) 남재걸 ‣ 김태운(2013)	‣ 구체적 개편모형 미제시

3. 대동제 실시모형

○ 전술한 도출논거 및 기존연구 등을 감안하면, 대동제의 실시모형은 다음과 같이 2개로 제시할 수 있음

- 즉, 현행의 일반구를 대체하는 대동제는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적용될 광역(廣域)동은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일정한 인구규모 및 면적규모를 기준으로 하나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동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에 부합하는 관장기능을 부여하는 대안적 모형임

○ 또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적용될 중심(中心)동은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즉, 여러 개의 동 중의 하나를 중심(中心)동으로 설치하여 관할의 소수 동 전체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생활편의 기능을 제공토록 하는 대안적 모형임

<표 4-2> 대동제 실시모형 설계

구분	내용
광역(廣域)동 모형	‣ 하나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동의 규모를 확대
중심(中心)동 모형	‣ 여러 개의 동 중의 하나의 동을 중심으로 설치

제3절 광역(廣域)동 모형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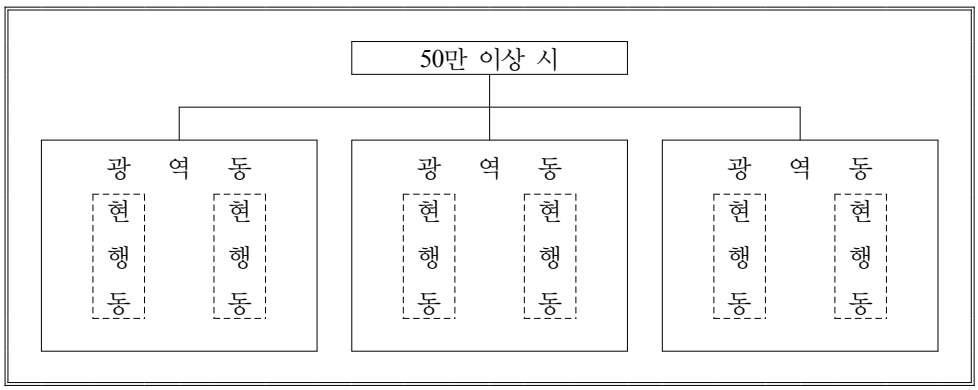
1. 대안의 개요

○ 광역(廣域)동 모형은 일반구의 폐지를 전제로 현행의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단일의 동으로 재편하는 대안임

– 개별 동의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현재보다 광역(廣域)의 동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확보하면서도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임

– 다만, 광역(廣域)동의 설치는 현행의 일반구를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된 대안임

<그림 4-3> 광역(廣域)동 모형의 구조



2. 동의 규모

1) 검토기준

○ 광역(廣域)동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인구규모와 면적규모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 즉, 관할구역의 인구규모와 면적규모의 설정 여하에 따라서 광역(廣域)동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임

○ 다만, 관할구역의 인구규모와 면적규모는 반드시 동일한 증감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즉, 양자간의 관계에서 인구규모가 클수록 면적규모가 동일한 수준으로 크거나 또는 면적규모가 클수록 인구규모가 동일한 수준으로 크게 되는 동일한 증감수준을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님

○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서 인구규모와 면적규모는 양자간의 증감수준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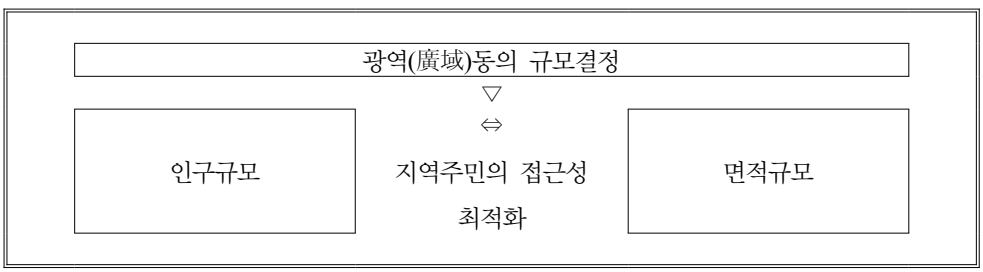
–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일한 인구규모에도 인구밀도에 따라서 면적규모는 다양한 편차를 보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광역(廣域)동의 규모는 인구규모와 면적규모가 동시에 적정수준

으로 반영하되,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

- 즉, 광역(廣域)동의 규모는 인구규모 또는 면적규모를 주요 변수로 검토하되,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최적화되는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4-4> 광역(廣域)동의 규모결정 기준



2) 기존사례의 분석

○ 동의 규모 적정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두 가지 차원의 검토가 존재하고 있음

- 하나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동 규모 적정화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과소 동의 통합에 관한 검토임

○ 50만 이상 대도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동 규모 적정화는 대동제의 설계를 위한 검토임

- 기존의 연구에서는 광역(廣域)동을 전제할 경우 인구규모는 7만에서 10만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면적은 10㎢(반지름 2㎞) 이상을 적정규모로 제시하고 있음

○ 과소 동의 통합에 관한 검토는 안전행정부 등 정부에서 문화·복지 등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의 제공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책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음

- 과소 동의 통합은 전술한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동 규모의 적정화와

달리 통합 대상 선정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제시되어 왔음

–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통합대상 기준은 1995년에는 인구 5천 미만, 2007년에는 인구 2만 미만 및 면적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3> 동 규모의 기존논의

구분	내용
광역동 설치규모 논의	‣ 인구규모 : 7만 ~ 10만 ‣ 면적규모 : 10㎢ 이상
안행부 과소 동 통합기준 (2007년 기준)	‣ 인구규모 : 2만 미만 ‣ 면적규모 : 3㎢ 미만

·인구 (전국평균 19,978명)		※ 2만 미만 1,154개
5천 미만 (142)		5천 이상 1만 미만 (317)
1만 이상 1.5만 미만 (342)		1.5만 이상 2만 미만 (353)
2만 이상 3만 미만 (524)		3만 이상 (395)
·면적 (전국평균 5.08㎢)		※ 3㎢ 미만 1,369개
0.5㎢ 미만 (146)		0.5㎢ 이상 1㎢ 미만 (525)
1㎢ 이상 3㎢ 미만 (698)		3㎢ 이상 5㎢ 미만 (168)
5㎢ 이상 10㎢ 미만 (243)		10㎢ 이상 (293)

3) 대안의 설계

○ 광역(廣域)동의 규모는 전술한 기존의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광역(廣域)동별 평균적으로 인구규모는 10만명 내외로 그리고 면적규모는 10㎢ 이상으로 설정함

– 광역(廣域)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구의 폐지를 전제로 현행 동의 규모를 확대하는 대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은 수준에서 관할구역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임

3. 관장기능

1) 검토기준

○ 광역(廣域)동의 관장기능은 원칙적으로 현행의 일반구와 동의 중간 수준에서 최적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즉, 광역(廣域)동의 기본 개념이 하부행정기관의 일종이되, 관할구역의 규모가 현행의 일반구보다 작으나 동보다는 큰 것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광역(廣域)동의 관장기능은 현행의 일반구가 관장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일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소한 관할구역에 적합한 기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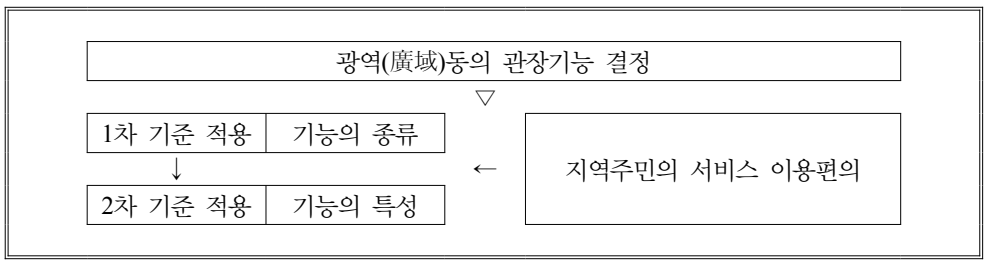
– 이 경우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검토요소는 기능의 종류와 특성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 즉,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관장기능을 기관유지 기능과 계획평가 기능, 사업집행 기능 및 생활편의 기능 등으로 구분하고 기능의 종류와 특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광역(廣域)동의 기능을 도출하는 것임

– 1차적으로 기능의 종류에서 계획평가 기능과 사업집행 기능은 관장범위에서 배제하고, 2차적으로 기관유지 기능과 생활편의 기능을 대상으로 기능의 특성에서 광역(廣域)동이 수행 필요성이 있거나 수행 역량이 있는 기능을 관장기능으로 검토하는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광역(廣域)동의 관장기능으로는 가급적 지역주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최적화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림 4-5> 광역(廣域)동의 관장기능 결정기준



2) 기존사례의 검토

○ 광역(廣域)동의 관장기준에 대한 기존논의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대동제 도입연구에서 검토되어 왔음

–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광역(廣域)동의 관장기능으로는 원칙적으로 생활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현행의 구청기능을 기능특성에 따라 본청 이관과 광역(廣域)동 이관으로 구분하는 대안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음

<표 4-4> 기존의 광역(廣域)동 관장기능 검토사례

구분	내용
금창호·권오철	■ 생활편의 집행기능 관장 - 세정, 복지, 청소, 건축, 주택, 민원 등
최영출	■ 주민생활 밀접기능 - 세무, 복지, 청소, 위생, 건축 등
김병국·하현상	■ 2개 대안 제시 - 1안: 현 동 기능과 구청 기능(기관유지+사업집행)의 물리적 융합 - 2안: 현 구청 기능 중 일부를 광역동으로 이양하는 기능의 융합

○ 일반구의 관장기능을 대상으로 광역(廣域)동에 이관할 기능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즉, 현지성과 집행성 등 본청이 직접 관장하지 않아도 효율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함

<표 4-5> 일반구의 광역(廣域)동 이관기능 판별기준

· 구와 시 간에 직급/내용/면적/금액/층수 등 규모와 범위로 구분되어진 사무 · 통합적 민원처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 · 일선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무 · 주민 접촉성 및 편의성을 갖는 사무 · 지도감독적 성격의 업무 · 시장이 반드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무 · 정책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 농촌지향적이지 않고 도시지향적인 사무 ·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 등

○ 전술한 판별기준에 따라 일반구 관장기능 중에서 광역(廣域)동으로 이관이 가능한 기능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사무위임조례/규칙에 준거한 위임자수 중심 판별의 결과임

<표 4-6> 일반구 관장기능의 광역(廣域)동 이관기능 예시

기관별	구청사무 중 광역동 이관대상 사무	현 동 기능
자치행정 기능	공무원복무 - 공무원임용권한(7급승진제외) - 통리장장학금 - 민방위 전체 - 6층이하 2,000㎡ 건축물정보통신공사 검사	민방위 일부
생활민원 기능	- 영화상영신고 - 유통관련업 교육/과태료부과징수/지도단속/위촉 - 출판사인쇄소 신고/지도단속 - 생활체육육성, 체육행사(과거 구단위) - 신고체육시설업 민원 - 체육시설관리 보수운영(1억 미만)	경로당/기초노령연금/매화장 신고/폐기물납부필증교부/쓰레기봉투관리/개별공시지가 민원/건축물대장발급
민원봉사 기능	-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 전체	주민등록표작성/ 각종 신고/가족관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신고 등
세무기능	- 시세부과징수 중 재산세 과세변동 및 중과자료 정리 제출 및 시세신고납부 독려 - 도세부과징수 중 취득세신고서발급	시세징수부과(일부)/도시부과징수(일부)

기관별	구청사무 중 광역동 이관대상 사무	현 동 기능
사회복지 기능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행려자 관리 -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지도단속업무 - 이미용 면허증 교부및처분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관리 - 노인복지/장애인 관련 업무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업무 - 청소년육성보호 관련 업무 -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 - 담배도소매업/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석유일반판매소 관련 권한 - 도시가스사업법/전기사업법 관련 권한	
산업환경 기능	- 공장등록 및 취소와 지도단속 - 농지 관련 권한(현 읍면장 권한) - 축산물운반및판매업/축산물판매업/동물약국개설 및 의료용구판매업 관련 업무 - 생활악취 관련 업무 - 특정공사 사전신고업무 운행차 점검 업무 - 소음진동배출시설 관련 업무 - 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환경보전법 관련 업무 중 5종사업장 업무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 -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 - 일반(사업장)폐기물 관리 관련 업무 - 재활용 관련 업무 - 음식물자원화 및 자원재활용 관련 업무	
건설도시 기능	- 지구단위계획 위반단속,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단속 업무 - 도시개발사업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 위법행위 단속 업무 - 도로건설 관련 업무 - 가로시설물 관리 관련 업무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관련 업무 - 지방도 접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업무 - 도로표지 및 지방도 설치 조명시설 유지관리 업무 - 도로환경정비 관련 업무 - 도유행정재산 관리 관련 업무 - 주차장 관리 관련 업무 -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 관련업무 - 택시/버스 설치유지 관련 업무 - 불법주정차 단속 및 조치 관련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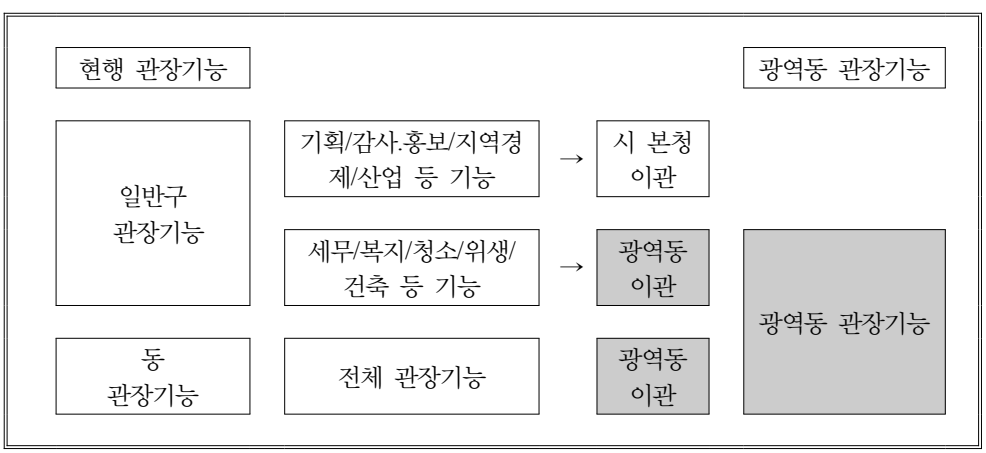
기관별	구청사무 중 광역동 이관대상 사무	현 동 기능
	- 이륜자동차관리 관련 업무 - 소하천 및 점용료 관련 업무	
건축기능	-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구청장) 전체 - 6층이하 건축물 관련 권한 - 일정 면적 이하의 증축 및 관리 관련 권한 - 건축물 대장 관련 권한 - 무허가 건축물 단속조치 - 공동주택/단지부설주차장 안전점검 및 관리	

3) 대안의 설계

○ 광역(廣域)동의 관장기능으로는 전술한 기존사례를 반영하여 현행의 동 기능과 일반구의 일부기능을 통합하여 관장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즉, 기능의 종류에서는 기관유지 기능과 생활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기능의 특성에서는 현행의 동 기능 전체와 일반구 관장기능 중에서 생활편의 기능에 해당되는 기능들을 광역(廣域)동으로 이관하여 관장토록 하는 것임

<그림 4-6> 광역(廣域)동의 관장기능



4. 기구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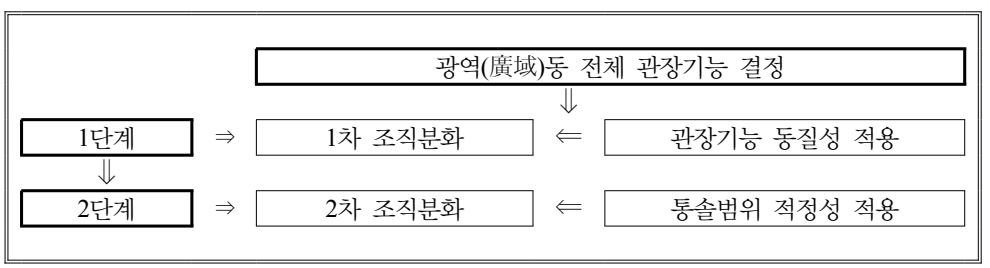
1) 검토기준

○ 광역(廣域)동의 기구편제는 일반적인 조직편성 원리에 따라 전체 관장기능을 대상으로 관장기능의 동질성과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

– 기본적으로 조직편성은 전체 관장기능을 대상으로 관장기능의 동질성에 따라 기능을 분류한 이후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솔범위의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관장기능의 동질성과 통솔범위의 적정성은 가급적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최종적인 기구편제 모형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함

<그림 4-7> 광역(廣域)동의 기구편제 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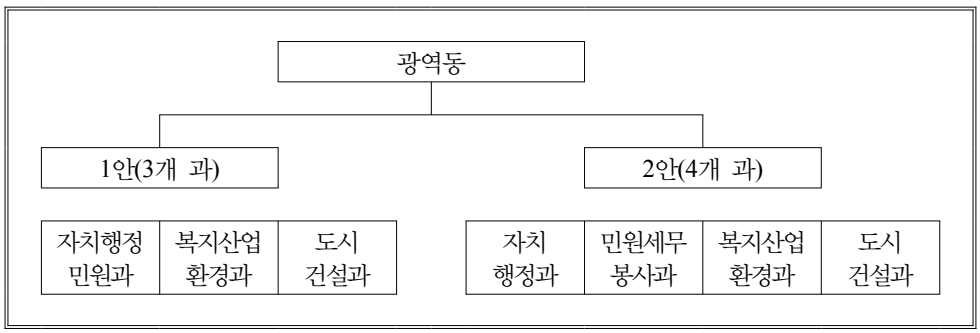


2) 기존사례의 검토

○ 광역(廣域)동의 기구편제에 관한 기존논의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대동제 도입에서 검토되고 있음

– 기존연구에 따르면, 광역(廣域)동의 기구편제는 일반구 관장기능의 일부가 이관됨을 전제로 동장(4급)과 과장(5급)의 직급체제와 더불어 관장기능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동장 밑에 3~4개 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림 4-8> 광역(廣域)동의 기구편제 검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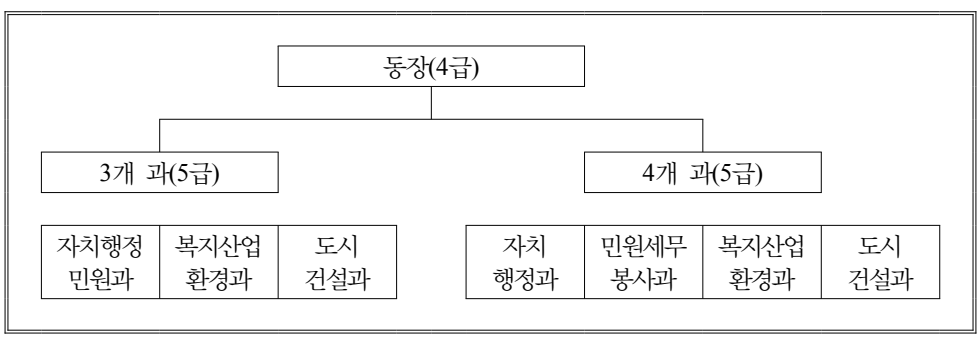
3) 대안의 설계

○ 광역(廣域)동의 기구편제로는 전술한 기존사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

– 광역(廣域)동이 관장하는 전체 기능규모를 감안하여 동장 밑에 3~4개의 과를 설치하되, 동장 및 과장의 직급은 과단위의 설치에 따라서 각각 4급과 5급으로 배치함

– 다만, 과 규모는 광역(廣域)동의 인구규모를 기초로 적정규모를 선택하도록 함

<그림 4-9> 광역(廣域)동의 기구편제



5. 인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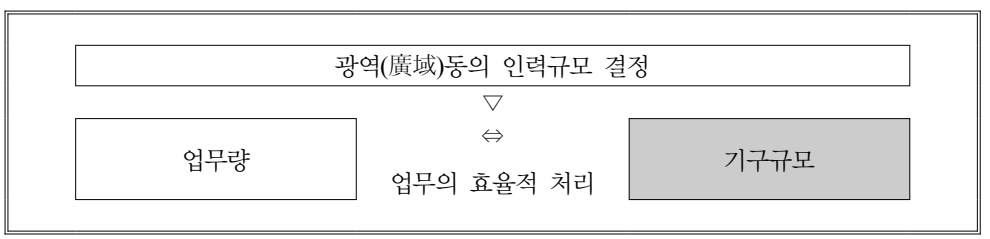
1) 검토기준

○ 광역(廣域)동의 인력규모는 기본적으로 관장기능의 업무량과 기구규모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인력규모는 보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관장기능의 업무량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다만, 광역(廣域)동의 관장기능 업무량을 명확하게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여기에서는 기구규모를 기준으로 인력규모를 예측함

<그림 4-10> 광역(廣域)동의 인력규모 기준



2) 기존사례의 검토

○ 광역(廣域)동의 인력규모에 관한 기존논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대동제 도입검토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두 가지 대안으로 구분됨

– 하나는 과단위 규모를 기준으로 과별 적정인구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대안이고, 다른 하나는 동과 일반구의 인력을 통합하여 중복기능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대안임

<표 4-7> 광역(廣域)동의 인력규모 산정논의 예시

구분	내용
금창호·권오철	■ 과단위 규모반영 - 과별 25명 인력산정
김병국·하현상	■ 중복기능 인력감축 - 일반구와 동의 동합인력에서 중복기능 인력분 감축 - 중복기능 : 서무, 회계, 지출, 민원발급(등본, 인감 등) 등

3) 대안의 설계

○ 광역(廣域)동의 인력규모는 전술한 기존사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

– 광역(廣域)동에 설치되는 과단위 규모를 기준으로 과별 25명의 인력규모를 배정하여 광역(廣域)동별 과단위 규모에 따라 인력규모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함

<표 4-8> 광역(廣域)동 모형의 인력추계 사례

구분	내용
전제요건	■ 기구 규모(인구 50만 시를 가정) - 광역동 6개 설치 : 동별 인구규모 9만 기준 - 광역동별 3개 과 설치 ■ 기구별 인력배치규모 - 과별 인력규모 25명
인력추계	■ 총 인력규모 - 6(광역동) × 3(광역동별 과) × 25(과별 인력규모) = 450명

6. 대안의 장단점

○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해정기관으로 광역(廣域)동 모형을 채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 즉, 광역(廣域)동의 도입에 따라 동의 기능이 확대되어 현장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에 반하여 본청의 기능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음

<표 4-9> 광역(廣域)동 모형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 동의 기능확대로 현장수요 탄력대응 ■ 인력 활용의 효율성 확보
단점	■ 본청의 업무확대 ■ 개편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저항

제4절 중심(中心)동 모형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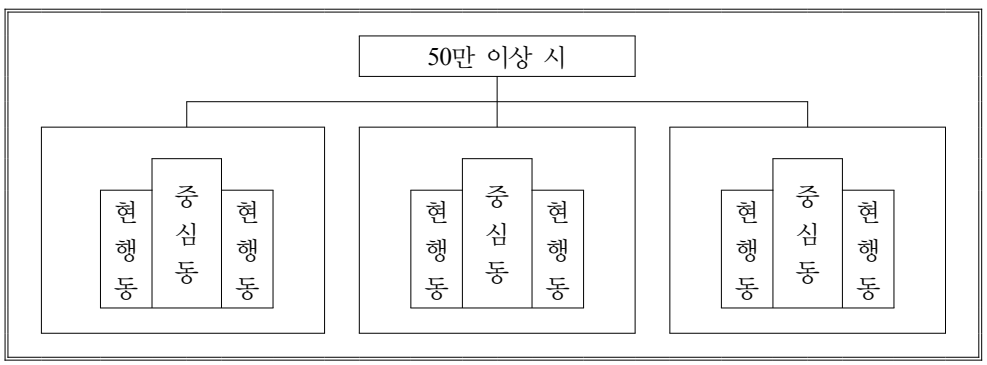
1. 대안의 개요

○ 중심(中心)동 모형은 일반구의 폐지를 전제로 현행의 2~3개 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그 가운데 하나의 동의 관장기능을 확대하여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안임

– 개별 동의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하여 2~3개의 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되, 중심지역의 동을 중심(中心)동으로 지정하여 일반구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관장토록 함

– 따라서 전술한 광역(廣域)동과 달리 일반구에서 이관되는 기능은 중심(中心)동에서만 수행하고, 나머지 동들은 현행의 동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임

<그림 4-11> 중심(中心)동 모형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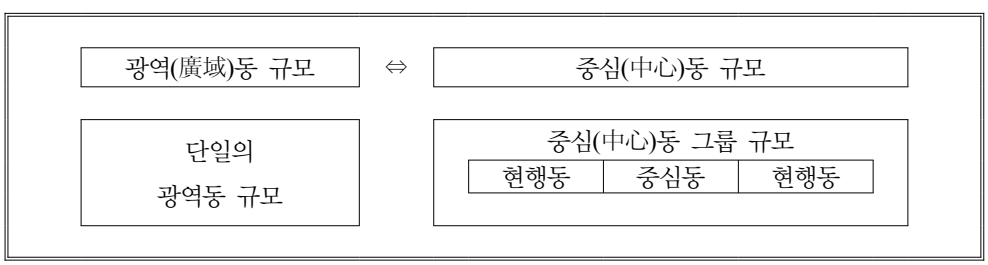
2. 동의 규모

1) 광역(廣域)동과 차이점

○ 동의 규모에서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음

– 광역(廣域)동은 단일의 광역(廣域)동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고, 중심(中心)동은 중심(中心)동을 포함한 2~3개의 현행 동의 그룹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임

<그림 4-12> 동 규모의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



2) 대안의 설계

○ 중심(中心)동의 규모는 전술한 광역(廣域)동과의 차이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

– 즉, 중심(中心)동과 광역(廣域)동의 차이는 단일 또는 그룹의 여부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규모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심(中心)동의 규모도 광역(廣域)동과 마찬가지로 중심(中心)동을 포함한 23개 동의 그룹규모를 기준으로 인구규모는 7만명에서 10만명 그리고 면적규모는 10㎢ 이상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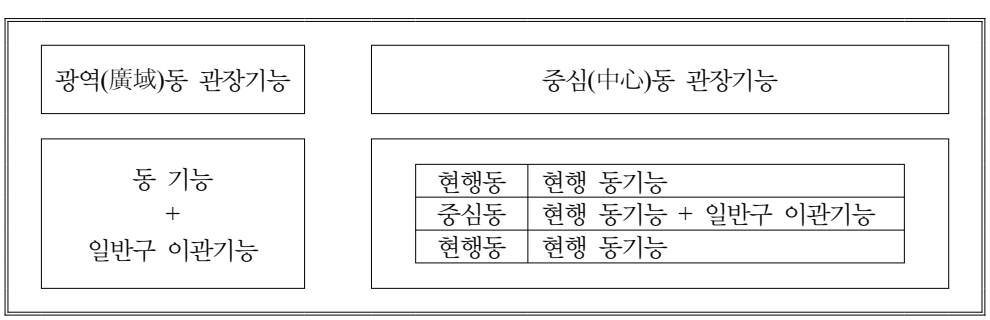
3. 관장기능

1) 광역(廣域)동과 차이점

○ 관장기능에서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음

– 즉, 기본적으로 현행 동기능과 일반구에서 이관되는 기능이 전체 동 관장기능으로 설정되나, 광역(廣域)동의 경우 단일의 광역(廣域)동에 전체 관장기능이 배분되나, 중심(中心)동의 경우 동일 그룹에 포함된 일반 동은 현행 동 기능이 배분되고 중심(中心)동에만 일반구 이관기능이 추가적으로 배분되는 것임

<그림 4-13> 관장기능의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



2) 대안의 설계

○ 중심(中心)동의 관장기능은 전술한 광역(廣域)동과의 차이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

– 즉, 중심(中心)동 그룹에 포함되는 현행의 일반 동은 현행의 동 기능을 그대로 관장하되, 일반구에서 이관되는 기능은 중심(中心)동에만 추가적으로 배분하여 중심(中心)동에 포함되는 전체 그룹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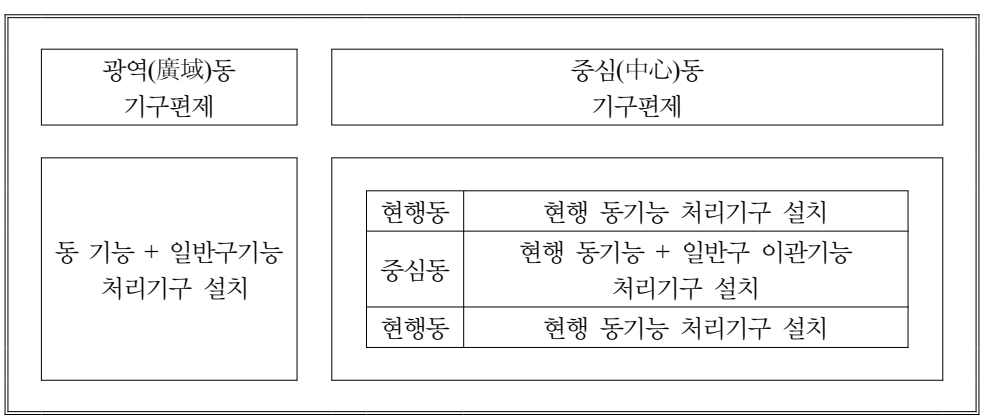
4. 기구편제

1) 광역(廣域)동과 차이점

○ 기구편제에서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음

– 즉, 일반구에서 이관되는 기능과 현행 동의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광역(廣域)동은 단일 동 내에서 통합하여 설계하나, 중심(中心)동은 그룹내의 중심(中心)동에만 처리기구를 설치하는 차이를 가지게 됨

<그림 4-14> 기구편제의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



2) 대안의 설계

○ 중심(中心)동의 기구편제는 전술한 광역(廣域)동의 기구편제와 차이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함

– 기본적으로 현행 동 기능을 처리하는 기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반구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처리하는 기구를 중심(中心)동에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중심(中心)동만 동장 밑에 3개의 과를 설치하여 기존의 동 기능과 일반구 이관기능을 통합처리하는 기구편제를 설계함

– 또한 직급체계는 그룹 내의 일반 동은 5급의 동장을 그리고 중심(中心)동은 4급의 동장과 5급의 과장을 배치함

5. 인력규모

1) 광역(廣域)동과 차이점

○ 인력규모에서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음

– 즉,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 그룹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광역(廣域)동에 비하여 중심(中心)동 그룹은 기존 동 기능의 수행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차이를 가지게 됨

<그림 4-15> 인력규모의 광역(廣域)동과 중심(中心)동의 차이점

광역(廣域)동 기구편제	중심(中心)동 기구편제
동 기능 + 일반구기능 처리인력	현행동 – 현행 동기능 처리인력 중심동 – 현행 동기능 + 일반구 이관기능 처리인력 현행동 – 현행 동기능 처리인력

2) 대안의 설계

○ 중심(中心)동의 인력규모는 전술한 광역(廣域)동의 인력규모와 차이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함

– 중심(中心)동 그룹에 포함되는 일반 동의 인력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심(中心)동의 인력규모는 3개 과의 설치를 기준으로 과별 25명의 인력을 배치함

6. 대안의 장단점

○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으로 중심(中心)동 모형을 채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 중심(中心) 모형을 채택할 경우 전술한 광역(廣域)동과 마찬가지로 동의 기능확대로 현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본청의 업무가 확대되고 광역(廣域)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력규모가 증가되는 단점이 있음

<표 4-10> 중심(中心)동의 장단점

구분	내용
장점	■ 동의 기능확대로 현장수요 탄력대응 ■ 인력활용의 효율성 확보
단점	■ 본청의 업무확대 ■ 인력규모의 상대적 증가

제5절 지원적 검토요소의 설계

1.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개정

1) 개정 필요성

○ 현행 인구 50만 이상 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의 제반규정은 다음과 같음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3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동법 제10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음(동법 제175조)

○ '인구 50만 이상 시' 규정은 당초 일반구의 설치기준이었으나, 도시 행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대상기준으로 변화되고, 또한 일부 관계법률에서는 명확한 판단근거 부족을 이유로 대도시 특례기준을 일반구가 설치된 시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동(大洞)운영을 통해 인력·예산 절감을 추진하는 일부 인구 50만 이상 시(창원)는 대도시 특례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하는 바,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구가 설치된 시' 규정 :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지정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지정권 등

2) 개정방안

○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인구 50만 이상 시'로 정비함

– 계층 및 시의 종류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도시' 용어 삭제

* 일반구가 설치된 시를 인구 50만 이상 시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정비

○ 대도시특례 대상 자치단체를 규정한 관계 법률 정비(부칙)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시'를 인용하도록 대도시특례 관계 법률 개정

2. 분동기준의 개정

1) 개정 필요성

○ 현재까지 분동기준은 행정 여건의 변화, 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되어 왔음
- 과거에는 4만명·2㎢ 이상, 3만-5만, 5만명 이상, 7만명 이상 등으로 그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현재에는 인구 5~6만명(면적 3㎢ 이상) 기준으로 분동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음(지침)
- 현행의 기준에 따라서 일반구를 설치한 시에서 다수의 분동수요가 발생되고, 이것이 기구 및 정원 규모를 증원시키는 원인이 되어 적절한 기준 개편이 필요함

2) 개정 방안

○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일반구를 설치할 경우 분동기준을 강화하여, 대동운영과 비교할 때 인력증원 요인을 억제함
- 창원시의 대동 규모(38.2천명, 10.46㎢)를 고려하여, 분동은 인구 8만명 이상(면적 20㎢)인 지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시의 경우에는 인구 7만 이상일 때 분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제시함

3. 기구 및 정원규정 개정

1) 개정 필요성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인구 7만 이상의 동에 보조기관(5급)을 설치할 수 없음

–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광역동을 설치할 경우 관장기능의 적정 수행을 위해서 4급 동장 밑에 보조기관(5급)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개정 방안

○ 광역동의 "기구 및 정원규정"을 일반구의 그것에 준하여 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주민편의를 최적화함

– “기구 및 정원규정”의 관련규정에서 광역동 및 중심동의 경우 동장(4급) 밑에 보조기관(5급)의 설치 가능성 포함

4. 기구감축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대책 수립

1) 수립 필요성

○ 전술한 3가지 대안모형의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현재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대폭 감축되는 현상이 초래됨

– 하부행정기관의 개편에 따른 기구 감축 특히, 5급 직위의 감축은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적인 승진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부천시의 자체 계획에 따르면, 현행의 일반구를 광역동으로 전환시킬

경우 37명의 5급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구감축에 따른 단기적인 잉여인력의 발생 및 승진 적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해소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2) 해소방안

○ 개선대안의 채택에 따른 기구감축과 이로 인한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하나는 개편대안의 적용 탄력성을 확보하여 기구감축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법임

- 전술한 개편모형에 따르면, 현행 일반구를 광역동으로 개편할 경우에만 대폭적인 기구 감축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에는 광역동의 보조기관 규모를 현행 일반구 체제의 수준을 감안하여 소폭의 감축을 단행하고, 장기적으로 기능 통합 등을 통해 점차 감축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임

<그림 4-16> 탄력적 기구감축 방안(부천시 기준)

현행	⇒	단기안	⇒	장기안
보조기관 63개(5급)		보조기관 48개(5급) (동별 인구7만 기준)		보조기관 32개(5급) (동별 인구10만 기준)
- 구청 : 26개(5급) - 동 : 37개(5급)		- 12개 동별 4개(5급)		- 9개 동별 4개(5급)

○ 다른 하나는 전술한 탄력적 기구 감축 안을 전제로 하되, 그래도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잉여인력의 적정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선, 명예퇴직 등 특별퇴직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퇴직특별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잉여인력의 적정해소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시책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여 해당인력을 흡수하는 것임

5. 중앙정부 지원시책에 대한 대안별 형평성 확보

1) 확보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수준이 차등화될 경우 지원수준이 높은 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호가 편중될 개연성이 높음
– 현행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수준이 차등화되는 대표적인 것은 총액인건비의 산정과 일반교부세의 산정임
– 기준인건비제는 인구와 면적 등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의 규모를 산정변수로 활용하고 있고, 일반교부세 역시 산정변수에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규모가 포함되어 있음
– 이처럼 기준인건비제 및 일반교부세 산정변수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규모가 활용될 경우 광역동을 대안으로 채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급적 광역동의 채택 및 활용을 회피할 개연성이 많음
– 따라서 전술한 3가지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2) 형평성 확보방안

○ 전술한 3가지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 하나는 하부행정기관의 규모가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고 간주되면, 기준인건비제와 일반교부세의 산정에서 하부행정기관의 규모를 활용변수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기준인건비제와 일반교부세의 산정에서 하부행정기관의 규모를 변수로 활용하되, 광역동 등을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보정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임
- 다만, 인력이나 재원의 실제 수요를 유발하는 하부행정기관의 규모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 불이익을 보전하는 후자의 방법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4-11> 형평성 확보방안

현행제도	개선방안
■ 기준인건비 산정변수 -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방재, 의회, 읍면동 기능에 하부행정기구 수의 변수적용 ■ 일반교부세 산정변수 - 표준행정수요의 인건비 산정에 총액인건비가 변수로 적용	■ 1안 : 기준인건비 산정에서 하부행정기관의 수를 변수에서 제외 ■ 2안 : 기준인건비 산정에서 하부행정기관의 수를 변수로 적용하되, 불이익 단체는 보정 ⇒ 건의안 : 현실적 인력수요 유발요인을 감안하여 2안을 활용

【참고문헌】

공민배.(2001).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 조정에 관한 연구: 창원시의 대동제 도입성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금창호·권오철.(2008). 50만 이상 시 하부행정기관의 효과분석과 개선대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금창호·권오철.(2008). 일반구-대동제의 비교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과제보고서.

김병국·하현상.(2012). 대도시 일반구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과제보고서.

남재걸·김태운.(2013).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적정성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통권 81호.

조성호 외.(2008). 행정구역 개편의 평가와 대안제시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8-20.

최영출.(2008). 인구 50만 이상 시 하부행정기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 참고 1 】용인시의 구청 위임사무 실태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공보관	1. 공고, 고시, 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고, 고시, 공시 (구청에 위임된 사항에 한함)	
행정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연가계획 및 허가	-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② 병가 및 공가허가	- 같은 조례 제21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③ 특별휴가 허가	- 같은 조례 제23조
	2.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구신설, 폐지, 분합이 있을 때에는 용인시 인사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전보(구간 전보 제외, 읍면소속 보직부여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② 7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신규임용 제외)	
		■승진(시기 및 인원 사전 승인)전보, 휴직, 복직, 징계, 승급, 겸임, 직위해제, 시보해제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징계집행	- 같은 법 제72조
		■근무성적 평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경력평정	- 같은 시행령 제31조의6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같은 시행령 제32조
		■승진(인원 사전승인)	- 같은 시행령 제32조
		③ 청원경찰 임면	- 청원경찰법 제5조
		■전보, 승급, 징계, 면직	
		④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고용·고용중지	-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3.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학생 선발	-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
		② 장학금 지급	- 같은 조례 제7조
		③ 장학금 지급 정지	- 같은 조례 제8조
정보통신과	1.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구청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의 위임범위에 한한다)	① 검사신청서 (설계도서등)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②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③ 사용전검사필증 교부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④ 사용전검사필증교부대장 정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⑤ 재검사실시(보완지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⑥ 수수료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⑦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 같은 법 제75조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에관한 사항	① 주민등록증의관리	- 주민등록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세정과	1.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의 고지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 세액제외)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세정과		② 부과취소 및 변경	- 같은 법 제58조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 세액 제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납기전 징수	-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④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⑤ 물납	- 지방세법 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⑥ 분납	- 같은 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⑦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기본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⑧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 같은 법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⑨ 시세징수유예 등	- 같은 법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 유예)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⑩ 과오납금의 처리 및 환부 이자계산	-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⑪ 서류의 송달	-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⑫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⑬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 같은 법 제1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2조
		⑭ 지방세 부과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 같은 법 제128조부터 제133조의14까지
	2.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별주택가격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②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가격 산정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③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④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⑤ 주택가격 개별(소유자) 통지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⑥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⑦ 주택가격 정정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⑧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징수과	1. 시세의 체납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납처분 [오백만원(가산금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
		② 결손처분	-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징수과		[오백만원(가산금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③ 관허사업의 제한 [오백만원(가산금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④ 체납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등의 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등)	- 같은 법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⑤ 서류의 송달	-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⑥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⑦ 징수촉탁	- 같은 법 제68조
		⑧ 공탁	- 같은 법 제72조
		⑨ 지방세 체납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오백만원(가산금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 같은 법 제128조부터 제133조의14까지
		⑩ 시세의 소멸시효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⑪ 시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⑫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 같은 법 제1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2조
		⑬ 인도명령	- 같은 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46조의 2
		⑭ 번호판 영치	- 지방세법 제131조
지역경제과	1.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	- 직업안정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처리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③ 유무료 직업 소개사업의 폐지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④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⑤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폐쇄조치	- 같은 법 제37조
		⑥ 과태료의 부과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⑦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현황보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⑧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지도·단속 및 결과보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⑨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7조
	2. 담배 도·소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②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 같은 법 제17조
		④ 담배판매업등의 휴·폐업	- 같은 법 제22조의2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지역경제과		⑤ 담배 도·소매인 취소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22조의3
		⑥ 담배 도·소매인의 보고 및 관련장부 등의 확인	- 같은 법 제24조
		⑦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 같은 법 제25조제3항
		⑧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 같은 법 제25조의4
		⑨ 담배도매업 등록	-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⑩ 담배도매업의 등록 취소	- 같은 법 제15조
		⑪ 과태료	- 같은 법 제28조
기업지원과	1. 공장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장의 등록 및 사후관리 (다만, 500㎡미만의 승인대상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② 공장의 등록의 변경 (다만, 500㎡미만의 승인대상외 공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2. 공장등록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장등록의 취소 (다만, 500㎡미만의 승인대상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3. 무허가공장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지도단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문화관광과	1. 영화상영신고	① 영화상영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통관련업 소양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②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③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④ 유통관련업 등록, 변경 등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⑤ 유통관련업 등록증 교부, 재교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문화관광과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⑥ 유통관련업 폐업 및 직권말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⑦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⑧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청문 등)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98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8조
		⑨ 유통관련업소 자율지도 요원 위촉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3.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출판, 인쇄소 신고 및 변경사항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②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4. 읍·면·동 민속행사지원	① 읍·면·동 민속행사지원	
체육진흥과	1.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체육 육성사업 (구청 단위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한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2. 체육행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육행사 추진 (구청 단위 체육행사에 한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같은 법 제8조
	3.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회원모집	- 체육시설의 설차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② 회원의 보호	- 같은 법 제18조
		③ 신고(변경)수리	- 같은 법 제20조
		④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같은 법 제27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체육진흥과		⑤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 같은 법 제29조
		⑥ 시정명령	- 같은 법 제30조
		⑦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32조
		⑧ 청문	- 같은 법 제33조
		⑨ 수수료	- 같은 법 제37조
		⑩ 고발	- 같은 법 제38조
		⑪ 과태료	- 같은 법 제40조
	4. 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육시설의 보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천만원 미만)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복지정책과	1. 저소득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사업	①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 주택법 제7조제1항의5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3. 의료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급여증 발급 및 관리	- 의료급여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각종 급여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② 행려자 발생처리 및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노인 장애인과	1. 노인복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노인 건강진단 실시	- 노인복지법 제27조
		② 경로우대사업의 실시 지원	- 같은 법 제12조, 제26조
		③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④ 상담 및 시설입소	- 노인복지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관리 (노인복지관 제외)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⑥ 가출·행려 노인 업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⑦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같은 법 제23조
		⑧ 노인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같은 법 제23조
		⑨ 저소득 노인 후원결연사업	- 같은 법 제4조
		⑩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사업	- 같은 법 제4조
		⑪ 노인대학 및 한글반 운영	- 같은 법 제4조
		⑫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 같은 법 제4조
		⑬ 노인회 분회 운영·활동비 지원	- 같은 법 제4조
		⑭ 월동난방비 지급	- 같은 법 제4조
		⑮ 가정도우미 지원	- 같은 법 제4조
		⑯ 노인일거리사업 추진	- 같은 법 제23조
		⑰ 노인일자리사업	- 같은 법 제23조
		⑱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감독	-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5조
		⑲ 경로당 신축, 임차, 유자·보수(1천 만원 이상)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노인 장애인과	2. 어버이날 행사	① 행사계획 및 추진	- 노인복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단속, 과태료 부과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②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 같은 법 제10조
		③ 시설 입·퇴소 의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④ 각종 급여지급	-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 장애인연금법 제13조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개장허가(무연분묘) 및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② 공설·공동묘지 관리	- 같은 법 제13조
		③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 문중)설치 인·허가 (변경)업무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④ 사설봉안시설(개인,가족, 종중,문중) 설치 신고(변경)업무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⑤ 공설묘지의 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서 발급(동에 한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⑥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동에 한함)	- 같은 법 제8조
		⑦ 공설묘지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동에 한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같은 법 제23조
		⑧ 사설자연·수목장지 (개인,가족,종중,문중) 설치 인·허가(변경)업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여성가족과	1. 한부모 가족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2.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및 관리	- 청소년기본법 제27조
		②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 청소년보호법 제5조
아동보육과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
		② 아동 등에 대한 조사	- 같은 법 제11조
		③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 같은 법 제4조
		④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사항	- 입양특례법 제35조
		⑤ 소년소녀 가정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
		⑥ 가정위탁 아동지원	- 같은 법 제15조
	2. 어린이집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정부지원 시설은 제외)	①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②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③ 비용의 보조금 등 지급	- 같은 법 제36조
		④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 같은 법 제40조, 제40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⑤ 지도와 명령	- 같은 법 제41조
		⑥ 보고와 검사	- 같은 법 제42조
		⑦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아동보육과		⑧ 시정 또는 변경명령	- 같은 법 제44조
		⑨ 어린이집의 폐쇄 등	-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⑩ 어린이집 및 원장 보육교사의 청문	- 같은 법 제49조
		⑪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의 행정처분	-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⑫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54조
		⑬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농업정책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양곡가공업의 등록, 신고	- 양곡관리법 제19조
		② 양곡가공업의 지도, 단속	- 같은 법 제27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
	2. 농약판매업에 관한 사항	① 판매업 등록신청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② 등록증의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③ 등록의 취소	- 같은 법 제7조제2항, 제29조
		④ 행정처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⑤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 같은 법 제25조
	3. 농약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징수	-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4. 농지소유의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농지법 제10조
		② 처분명령의 유예	- 같은 법 제12조
		③ 청문실시	- 같은 법 제55조
		④ 이행강제금 부과	- 같은 법 제62조
	5. 농지의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 농지법 제20조
	6.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관리	- 농지법 제23조
	7.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	- 농지법 제35조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및 변경	- 같은 법 제36조
		③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39조
		④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 전용 용도변경 승인	- 같은 법 제40조
		⑤ 불법 전용농지단속 및 허가(협의)의 사후관리(원상회복, 고발등)	-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⑥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 수수료 징수	- 같은 법 제56조
	8. 축산업등록에 관한 사항	① 부화업, 종축업 등록	- 축산법 제22조
		② 계란집하업 등록	- 같은 법 제22조
		③ 가축사육업 등록	- 같은 법 제22조
	9. 초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초지조성허가	- 초지법 제5조
		② 초지전용허가	- 같은 법 제23조
		③ 초지관리 실태조사	- 같은 법 제24조
	10. 가축통계	① 가축통계조사	- 농림통계조사규칙(농림부령 제1384호)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농업정책과	11.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에 관한 사항	①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 축산법 제17조
		②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사항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7조
		③ 가축인공수정소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고	- 같은 법 제17조
	12. 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① 동물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 동물보호법 제4조
		②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2조
		③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4조
		④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 같은 법 제15조
		⑤ 영업의 등록 (동물판매업 등)	- 같은 법 제33조
		⑥ 영업의 신고(동물생산업)	- 같은 법 제34조
		⑦ 과태료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47조
	13. 수산 및 내수면 안허가에 관한 사항	① 내수면어업허가	- 내수면어업법 제9조
		② 내수면어업 신고(변경,폐지)	- 같은 법 제11조
		③ 어선등록	- 어선법 제13조
		④ 어선관리	- 같은 법 제15조
		⑤ 수산가공업신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
		⑥ 양어장 신고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⑦ 내수면어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5조, 제27조
		⑧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취소 등)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⑨ 낚시터업의 승계	- 같은 법 제21조
		⑩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폐쇄 조치 (영업의 폐쇄 및 폐기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23조, 제38조, 제42조
		⑪ 낚시터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24조
		⑫ 낚시어선업의 신고(폐업신고 등)	- 같은 법 제25조, 제39조
		⑬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55조
	14. 축산물 운반업에 관한 사항	①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② 축산물운반업 변경허가	- 같은 법 제24조
		③ 축산물운반업 휴업,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4조
		④ 축산물운반업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6조
		⑤ 축산물운반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7조, 제36조, 제38조, 제47조
	15. 축산물판매업에 관한 사항	①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② 식육판매업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4조
		③ 식육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4조
		④ 식육판매업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6조
		⑤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 신고	- 같은 법 제24조
		⑥ 식육부산물판매업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4조
		⑦ 식육부산물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4조
		⑧ 식육부산물판매업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6조
		⑨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	- 같은 법 제24조
		⑩ 우유류판매업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4조
		⑪ 우유류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4조
		⑫ 우유류판매업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6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농업정책과		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 같은 법 제24조
		⑭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변경 신고	- 같은 법 제24조
		⑮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4조
		⑯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26조
		⑰ 축산물판매업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7조, 제36조, 제38조, 제47조
		⑱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 같은 법 제24조
		⑲ 식용란수집판매업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4조
		⑳ 식용란수집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4조
		㉑ 식용란수집판매업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6조
		㉒ 기타 판매업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4조
	16. 동물약국 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동물약국 개설 등록 신청	- 약사법 제20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② 동물약국 등록사항등의 변경	- 같은 법 제20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③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2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17.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
		②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 같은 법 제17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③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폐업·휴업·재개업	- 같은 법 제17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18.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규칙 관련 행정처분	① 승인, 등록의 취소	- 약사법 제76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②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81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득규칙 제52조
	19. 동물병원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동물병원개설 신고	- 수의사법 제17조
		② 동물병원 신고사항 변경	- 같은 법 제17조
		③ 동물병원 휴업,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18조
		④ 동물진료업의 정지	- 같은 법 제33조
		⑤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41조
산 림 과	1. 산불예방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입산허가	- 산림보호법 제15조
		②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허가	- 같은 법 제34조
		③ 산불예방활동	- 같은 법 제33조
	2. 산지정화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산지정화활동	- 산림보호법 제14조
	3.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 산림보호법 제9조
		② 사법경찰 업무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4. 등산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등산로 재정비 및 관리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② 산악구조대의 운영	- 같은 법 제28조
	5. 숲사랑 소년단에 관한 사항	① 숲사랑 소년단 선발계획 보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산 림 과		② 숲사랑 소년단 명단보고	- 같은 법 제16조
		③ 숲사랑 소년단 하기수련 대회계획	- 같은 법 제16조
환 경 과	1. 토양오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②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 같은 법 제14조
		③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26조의2
		④ 과태료 징수	- 같은 법 제32조
	2.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① 야생동물 밀렵단속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② 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 같은 법 제44조
		③ 수렵면허 취소 및 정지	- 같은 법 제49조
	3.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①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유지관리	-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4. 낚시행위의 제한사항에 대한 지도업무	① 위반사항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82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녹색성장과	1. 생활악취에 관한다음의 권한	① 생활악취의 규제(개선권고 등)	- 악취방지법 제14조
	2.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②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 같은 법 제25조
		③ 생활소음 진동 발생자 및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 내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23조
		④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같은 법 제20조
	3.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제37조
		② 운행차의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8조
	4. 소음진동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대기·수질 복합시설일 경우 1개 시설이라도 3종 내지 4종에 해당 되는 사업장은 제외)	①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②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③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④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 같은 법 제15조
		⑤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 명령	- 같은 법 제16조
		⑥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 폐쇄명령	- 같은 법 제17조
		⑦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18조
		⑧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47조
		⑨ 과태료의 징수	- 같은 법 제60조
		⑩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51조
	5. 석면건축물 신고 및 관리	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따른 조치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수리 및 교육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③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같은 법 제27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녹색성장과		④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 같은 법 제28조
		⑤ 석면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중지 등	- 같은 법 제29조
		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지정 및 관리	- 같은 법 제30조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판매사업 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
		② 판매사업 변경허가	- 같은 법 제3조제3항
		③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8조
		④ 동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 같은 법 제7조
		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같은 법 제16조
		⑥ 동사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	- 같은 법 제9조
		⑦ 동사업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	- 같은 법 제29조, 제34조
		⑧ 동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52조
		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	- 같은 법 제27조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판매사업 허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② 판매사업 변경허가	- 같은 법 제4조제3항
		③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8조
		④ 동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 같은 법 제7조
		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같은 법 제15조
		⑥ 동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	- 같은 법 제9조
		⑦ 동사업자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24조
		⑧ 동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43조
		⑨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같은 법 제20조
	8.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가스특정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청소행정과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 및 고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분리배출 미이행, 종량제 규격 봉투미사용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②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매립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68조
		③ 폐기물의 투기금지 행위단속	- 같은 법 제8조
	2. 농촌폐비닐에 관한 업무	①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3.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② 공중용 쓰레기 수집운반 및 수거용기 청결유지등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4조제1항
		③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장소 수거일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4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청소행정과		④ 청소장비 및 시설 관리	- 같은 조례 제34조
		⑤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감면,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⑥ 환경미화원 고용 및 관리감독	- 용인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정
		⑦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대행비 지급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4.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5. 사업장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②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7조
	6.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	①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7. 나눔장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따른 장터 확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8.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재활용품 판매장 지도·관리	- 같은 법 제4조
		③ 재활용품관련 차량 및 음식물차량	- 같은 법 제4조
		④ 적환장 관리(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9.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및 관리(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제15조부터 제68조까지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10.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업소의 관리에 관한 업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업소의 위반사항 처리(보고 및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9조, 제10조, 제40조. 제42조, 같은 법시행령 제50조
위생과	1. 조리사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조리사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 식품위생법 제53조
		② 조리사의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	- 같은 법 제80조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업종 (단,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① 영업의 신고(허가), 변경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식품위생법 제37조
		② 영업자 지위승계	- 같은 법 제39조
		③ 영업의 폐업신고	- 같은 법 제37조
		④ 영업의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업무 등 포함)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제101조
		⑤ 영업소 출입, 검사, 수거 등의 업무	- 같은 법 제22조
		⑥ 무신고식품영업 등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2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위생과	위생등급 업무 제외)	⑦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업무	- 같은 법 제88조
	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⑧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같은 법 제90조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변경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단, 숙박업·목욕장업 제외)	② 공중위생업의 지위승계	- 같은 법 제3조의2
		③ 공중위생업의 폐업신고	- 같은 법 제3조
		④ 공중위생업의 행정처분	-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업무포함)	제22조
		⑤ 공중위생업의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9조
		⑥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등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4. 아미용사 면허에 관한 다음의	① 아미용사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권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② 아미용사 면허 취소 등	- 같은 법 제7조, 제12조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5. 공중위생법에 의한	① 신고 및 변경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②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8조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3조
		④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관한 업무	- 같은 법 제20조, 제23조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① 영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업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②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11조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 영업자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등	
		④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 같은 법 제37조,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⑤ 포상금 지급	- 같은 법 제40조
		⑥ 영업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에 관한	- 같은 법 제20조
		업무	
도시계획과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다음	①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권한		제54조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	- 같은 법 제54조
		인·허가 관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협	
		의 등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보상		제123조
	3. 개발제한구역 지도·감독	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②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	- 같은 법 제30조
		③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 같은 법 제32조
도시개발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관리에 관한	① 도시개발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 도시개발법 제9조
	다음의 권한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① 택지개발예정지구 위법행위 단속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다음	① 준공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권한	사업지구 등의 인·허가 관련 지구	제54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시개발과		단위계획업무(지구단위계획변경 제외)	
		② 준공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 같은 법 제54조
	4.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형질변경 5,000㎡이상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② 개발행위의 허가기간 연장 및 명의변경 (토지형질변경 5,000㎡이상제외)	- 같은 법 제56조
		③ 개발행위의 준공 (토지형질변경 5,000㎡이상제외)	- 같은 법 제62조
		④ 불법토지형질 변경 고발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 같은 법 제140조
건축행정과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 건축법 제11조 및 제21조
		②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③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 같은 법 제22조
		④ 건축협의	- 같은 법 제29조
		⑤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 같은 법 제10조
		⑥ 적용의 완화	- 같은 법 제5조
		⑦ 기존건축물의 특례	- 같은 법 제6조
		⑧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 같은 법 제13조
		⑨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같은 법 제17조
		⑩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9조
		⑪ 가설건축물의 허가	- 같은 법 제20조
		⑫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입주자 모집	- 주택법 제38조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신청규모가 6개층 이하로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경우에 한한다)	①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 건축법 제11조 및 제21조
		②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③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 같은 법 제22조
		④ 건축협의	- 같은 법 제29조
		⑤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 같은 법 제10조
		⑥ 적용의 완화	- 같은 법 제5조
		⑦ 기존건축물의 특례	- 같은 법 제6조
		⑧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 같은 법 제13조
		⑨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같은 법 제10조
		⑩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9조
		⑪ 가설건축물의 허가	- 같은 법 제20조
	3.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 건축법 제14조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같은 법 제20조
		③ 공작물 축조신고	- 같은 법 제83조
		④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36조
		⑤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9조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용도변경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면적이 2천제곱미터	- 건축법 제19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축행정과		이하의 용도변경)	
		② 대수선 허가신고 (신청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의 대수선)	- 같은 법 제11조
		③ 건축물의 유지관리	- 같은 법 제35조
		④ 시설물 유지관리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 같은 법 제35조
		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6층이하 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5. 건축물대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 건축법 제38조
		② 건축물 대장전환 및 합병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③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및 정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④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⑤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등	- 같은 규칙 제25조
	6.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대수선의 위임범위에 한한다)	① 공사중지	- 건축법 제79조
		② 시정명령	- 같은 법 제79조
		③ 고발	- 같은 법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
		④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0조
		⑤ 재산압류	- 국세징수법 제24조
		⑥ 공매처분	- 같은 법 제61조
	7.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조치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건축허가 및 신고의 위임범위에 한한다)	① 무허가 건축물 예방 및 단속	- 건축법 시행령 제24조
		② 무허가 건축물 철거	- 건축법 제85조
		③ 행정대집행 업무	- 같은 법 제85조
	8. 사용승인된 부설 주차장 위법사항 조치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① 용도변경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② 타용도 사용행위 조치	- 주차장법 제19조의4
		③ 본래의 기능유지 관리	- 같은 법 제19조의4
	9.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한다)	①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②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③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0조
		⑤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⑥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4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축행정과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⑦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취소	- 같은 법 제13조
		⑧ 허가신고·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	- 같은 법 제17조
		⑨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⑩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10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⑪ 행정대집행의 특례	- 같은 법 제1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주 택 과	1.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 주택법 제50조
		②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업무	- 주택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②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행정 처분	- 주택법 제101조
		③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시행령 제50조
		④ 공동주택 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 주택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⑤ 단지 부설주차장 안전점검 및 관리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⑥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 주택법 제42조
		⑦ 준공 후 공동주택 유지 관리 등	- 주택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⑧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	- 주택법 제55조
	3.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토지정보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2.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취하·반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18조, 제119조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20조
		③ 토지거래허가 일반업무	- 같은 법 제118조
		④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 실태조사	- 같은 법 제124조제2항
		⑤ 토지거래허가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부칙<법률7707호(2005.12.07)>제3항
		⑥ 토지거래허가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 같은 법 부칙<법률7707호(2005.12.07)>제3항
		⑦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 같은 법 제124조의2
		⑧ 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제124조제3항
	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③ 부동산중개업 이전(명칭변경) 신고	- 같은 법 제20조
		④ 부동산중개업(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21조
		⑤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⑥ 업무보증(변경)설정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⑦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토지정보과		⑧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⑨ 부동산중개업 과태료처분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⑩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	-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⑪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⑫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 필증)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⑬ 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제46조
	4.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등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토지조사)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②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등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③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⑤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	- 같은 법 제13조
		⑥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⑦ 개별공시지가의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	- 같은 법 제11조제1항
	5.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확인조사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③ 과징금 물납 허가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④ 이행강제금 부과	- 같은 법 제6조
		⑤ 과징금 체납 처분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6. 부동산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 거래 계약 검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②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조, 제11조
		③ 부동산 거래의 신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④ 신고내역 조사	- 같은 법 제27조의2
		⑤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 같은 법 제28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1조
	7. 외국인토지 취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외국인토지 취득계속 보유신고 및 허가	-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②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조
	8.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의 거래 신고	- 주택법 제8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3
		② 신고내용의 조사 등	- 같은 법 제80조의3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1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토지정보과	9.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종중, 종교 기타단체)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건 설 과	1.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②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 같은 법 제22조, 제80조, 제81조, 제99조
	2.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에 권한	①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38조
		②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고발	- 같은 법 제41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③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허가	- 같은 법 제64조
	3. 도로건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 및 교량 개설 사업(폭12m이하)	- 도로법 제23조
		② 도로교량 위수탁사업 추진(12m이하)	- 같은 법 제23조
		③ 도로 및 교량 확포장 사업	- 같은 법 제23조
		④ 도로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검사	- 같은 법 제23조
		⑤ 도로공사 편입용지 및 보상 업무(폭 12m 이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1조, 제81조
		⑥ 도로공사관련 위수탁보상 업무	- 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⑦ 도로공사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 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⑧ 도로시설물 설치(육교, 지하도)	- 도로법 제23조
		⑨ 도로·교량 유지보수 관리업무	- 같은 법 제23조
		⑩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감독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⑪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⑫ 자전거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 같은 법 제23조
		⑬ 보행자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 같은 법 제23조
		⑭ 동주민센터 발주공사 지도감독	
		⑮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4. 가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23조
		② 과적차량 지도단속	- 같은 법 59조
		③ 설해대책 사업 추진	
		④ 수로원 지도감독	
		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 같은 법 제38조, 제45조
		⑥ 접도구역 관리	- 같은 법 제49조제2항
		⑦ 도로소파보수 및 정비	- 같은 법 제23조
		⑧ 도로표지판 관리	- 같은 법 제57조
		⑨ 비법정도로 관리	- 같은 법 제23조
하천방재과	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제21조
		②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4조, 제22조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하천점용허가	- 하천법 제33조
		② 하천점용료 부과징수고발	- 같은 법 제37조, 제94조, 제95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하천방재과	3. 소하천점용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및 조정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② 소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세 징수	- 같은 법 제23조
		③ 소하천부지 관련 세외수입정기보고	-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4.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하천 점·사용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② 소하천사업(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 같은 법 제8조
		③ 소하천 유지·관리	- 같은 법 제3조
	5.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의 관리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② 공유수면 사용허가	- 같은 법 제5조
		③ 사용료의 징수	- 같은 법 제9조
		④ 원상회복의무 명령면제 승인	- 같은 법 제12조
		⑤ 권리, 의무의 이전 등	- 같은 법 제11조
		⑥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7조
		⑦ 조사 등	- 같은 법 제14조
		⑧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 같은 법 제13조
		⑨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변경 및 최고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6.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규모 지역·직장민방위대 통합 편성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② 직장 연합민방위대 구성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③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이전·명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④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7. 민방위대 지휘감독 및 검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관내 직장민방위 대대장의 감독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② 민방위대 편성·교육훈련·시설장비 현황 검열	- 같은 법 제22조
	8.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직장 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 교육 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②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9.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10.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	- 민방위기본법 제26조
	11. 민방위 준비 명령	① 민방위 준비 명령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12.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 장비물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 준비를 명할 시설 및 장비물자 관리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용대비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	
		■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표지판 설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3. 자연재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②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3조제4항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하천방재과		③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 같은 법 제66조
		④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제74조
		⑤ 재난상황 보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⑥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의 지정	- 같은 법 제35조
		⑦ 응급조치의 지원 등	- 같은 법 제37조
		⑧ 재난상황기록 관리	- 같은 법 제69조
	14. 우수유출저감 시설에 대한 관리	① 우수유출저감 시설 유지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9조
교통정책과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부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징수부담금 경감비율 적용	-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	- 같은 조례 제8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	- 같은 조례 제9조
		■통근관리인 선임 등	- 같은 조례 제12조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 같은 조례 제13조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및 경감신청 내역 확인 조사	- 같은 조례 제14조
	2.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영노외(둔치포함) 및 노상주차장유지관리(연간단가 계약 포함)	-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② 주차장(기계식, 노상, 노외)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③ 거주자 우선주차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9조, 제10조
		④ 민영주차장 설차·변경· 폐지신고	- 같은 법 제12조
		⑤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고	- 같은 법 제19조의14
		⑥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휴업, 폐업)신고	- 같은 법 제19조의17
		⑦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교부	- 같은 법 제19조의7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연간단가 계약포함)	- 도로교통법 제3조
		②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③ 일방통행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
	5. 불법주정차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60조, 제161조
		②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 같은 법 제1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3
		③ 비송사건 이첩	- 질서행위규제법 제21조
		④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	- 도로교통법 제6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대중교통과	1. 택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 계약 포함)	-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39조
	2. 무단방치 차량관리	① 무단방치 차량 신고접수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②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 같은 법 제26조
		③ 통고처분 및 검찰송치	-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35호)
차량등록과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② 이륜자동차의 변경·사용 폐지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3조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 같은 법 제9조, 제52조
		④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 같은 법 제18조,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⑤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교부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⑥ 이륜자동차(폐지)대장 발급	- 같은 법 제7조, 제52조
		⑦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 같은 법 제26조, 제52조
		⑧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 수리	- 같은 법 제28조, 제52조
		⑨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⑩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⑪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1.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유지관리 종합계획수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② 점용허가, 사용승인, 사용수익허가 점용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③ 재정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④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관리 (건축물·전기·수경 등)	- 같은 법 제19조
		⑤ 불법행위 지도·단속	- 같은 법 제24조
		⑥ 관련통계 및 공원대장 관리	- 같은 법 제51조
	2. 녹지(완충, 경관, 연결, 공공공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② 점용허가, 사용수익허가, 사용승인, 점용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38조, 제41조, 제4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③ 기타녹지정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④ 불법행위단속	- 같은 법 제38조
	3. 광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광장 사용승인, 점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불법행위단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② 광장재정비 및 시설물 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4. 가로수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가로수 재정비 및 관리 (전정·병충해·보식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② 가로수이식(제거)민원 및 변상금징수	- 같은 법 제74조제2항
	5. 기타녹지에관한 다음의 사항	① 교통섬·나들목 중앙분리대·보행자도로 수목 및 녹지관리,시설물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② 옥상녹화 사업 및 학교숲 관리 1억그루나무심기 관리 및 관상수무궁화 관리	- 같은 법 제20조
	6. 가로화단, 쉼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로화단, 쉼터조성 및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7. 꽃식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꽃식재 계획 및 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② 사업시행	- 같은 법 제20조
		③ 추진실적보고	- 같은 법 제20조
상하수도 사 업 소 상하수 행정과	1.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하수배출량의 조사	- 하수도법 제65조
		② 하수배출량의 산정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④ 부과액 조정 신청 접수 및 결정	
		⑤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상하수도 사 업 소 수도시설과	1. 지하수보전 및 개발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 3
		②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신고 등	- 같은 법 제9조의4
		③ 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10조
	2.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원상복구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②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및 오염 유발시설 조치	-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③ 수질검사 및 출입검사 등	-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④ 타인토지에 출입 등	- 같은 법 제31조
		⑤ 허가 수수료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33조
		⑥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취소 청문	- 같은 법 제35조
		⑦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3.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의 등록		- 같은 법 제22조
	4.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의 등록		- 같은 법 제27조
	5.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시설물 유지관리	- 먹는물관리법 제8조
		② 수질채수 및 검사의뢰 수질검사 성적서 홍보 및 게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상하수도 사 업 소 하수시설과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 된 건축 안·허가, 신고사항에 한한다)	- 하수도법 제61조
		② 공공하수도공사 및 유지관리 및 행정처분	- 같은 법 제11조, 제19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③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접수처리	- 같은 법 제27조
		④ 점용허가(행정처분 포함)	- 같은 법 제24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⑤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 같은 법 제2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⑥ 인허가 관련법 협의(용인시 사무위임 조례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허가, 신고사항에 한한다)	
		⑦ 점용료의 징수	- 같은 법 제65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⑧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변경)신고(공공하수도 사용 신고)	-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⑨ 배수시설 설치 허가취소 및 검사(행정처분 포함)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다음에 권한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하수도법 제34조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 같은 법 제37조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같은 법 제39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에 권한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 하수도법 제40조
	4. 분뇨의 재활용(변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분뇨의 재활용(변경) 신고	- 하수도법 제44조
	5. 기술관리인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기술관리인 교육 등	- 하수도법 제66조
	6.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변경)신고 및 준공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②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 같은 법 제15조
		③ 가출분뇨배출시설 관리	- 같은 법 제17조
	7.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8. 가축분뇨의 재활용 (변경)신고 및 가축 사육제한지역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축분뇨의 재활용 (변경) 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동법 제17조
		② 가축사육제한지역관리	- 같은 법 제8조
	9. 기술관리인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기술관리인 교육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7조
	10.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방화장실 지정 및 공중화장실 등 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이동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의 관리	-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③ 유료화장실 지도·관리	- 같은 법 제11조
		④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⑤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 행위지도	- 같은 법 제14조
		⑥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같은 법 제16조
		⑦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 참고 2 】 용인시의 읍·면·동 위임사무 실태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행정과	1. 그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부여(동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비치	- 주민등록법 제7조 - 같은 법 제22조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비치기록	- 같은 법 제7조
		③ 주민등록번호 부여	- 같은 법 제7조
		④ 주민등록표 재작성	- 같은 법 제22조
	2. 주민등록 신고 및 처리	① 주민등록 신고 및 처리	-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6조,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3.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등	①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4.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의한 주민 등록표의 정리	①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본적지 통보	- 주민등록법 제14조
	5.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6. 주민등록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신규 증민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 주민등록법 제24조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 같은 법 제27조
		③ 습득 및 회수주민등록증 보관 및 인계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7.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주민등록법 제40조
세정과	1.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고지서(독촉장) 교부 및 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
		② 재산세 과세변동 자료 정리 및 제출(읍면장에 한함)	- 지방세법 제105조, 제121조
		③ 기타 시세중과 자료 정리 및 제출(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105조, 제121조
		④ 시세 신고납부 독려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105조, 제121조
징수과	1. 시세의 체납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② 고지서(독촉장) 교부 및 송달	- 같은 법 제28조
		③ 체납액 징수	- 같은 법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
노인장애인과	1. 장애인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등록 신청·접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②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통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③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④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신청·접수	-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노인장애인과	2.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경로당 설치, 변경, 폐·휴지 신고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0조
		② 경로당 시설관리 및 지원	- 같은 법 제4조
		③ 운영·난방비 지급	-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④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 같은 법 제23조
		⑤ 경로당 사업의 정지	- 같은 법 제43조
	3.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
	4. 매·화장 및 묘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화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공설묘지의 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 증명서 발급(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③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13조
		④ 공설묘지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23조
여성가족과	1.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한부모가족 상담 및 보호 조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농업정책과	1. 농지의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읍면장에 한함)	- 농지법 제20조
	2.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관리 (읍면장에 한함)	- 농지법 제23조
	3.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 (읍면장에 한함)	- 농지법 제35조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및 변경(단, 제1항1호 규정의 시설설치에 대하여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36조
		③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취소(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39조
		④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40조
		⑤ 불법 전용농지단속 및 허가 (협의)의 사후관리(원상회복, 고발 등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39조, 제42조
		⑥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 수수료 징수(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56조
		⑦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 전용 용도변경 승인(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40조
청소행정과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및 관리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읍면장에 한함)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63조
	2.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로청소 및 민원처리(무단방치쓰레기) (읍면장에 한함)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4조
		②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및 지도점검(읍·면장에 한함)	- 같은 조례 제34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청소행정과		③ 청소장비 및 시설관리(읍면장에 한함)	- 같은 조례 제34조
		④ 환경미화원 관리 및 지도감독 (읍면장에 한함)	- 같은 조례 제34조
		⑤ 국토대청결추진업무	- 같은 조례 제7조
		⑥ 봉투판매소지정 및 지도점검	- 같은 조례 제34조
		⑦ 마을별 대청소용 공공용봉투 수령 배부 및 마을별 대청소 일정지정	- 같은 조례 제34조
		⑧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교부 및 판매	- 같은 조례 제34조
		⑨ 생활보호 대상자 쓰레기봉투 무상 공급	- 같은 조례 제34조
건축행정과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단, 옥상간판, 네온류를 사용한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및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읍면장에 한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②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3조
		③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10조
		⑤ 옥외광고물 등에 표시허가 취소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13조
		⑥ 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17조
		⑦ 행정대집행의 특례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1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3까지
토지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하천방재과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대 편성(기술지원대제외)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② 소규모 통리 지역 민방위대 통합 편성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2. 민방위대 지휘감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관내 통리 민방위대장 감독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3.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4. 과태료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5. 민방위대 동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민방위대 동원명령	- 민방위기본법 제26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차량등록과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읍면장에 한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② 이륜자동차의 변경·사용 폐지 신고(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3조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9조, 제52조
		④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18조,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⑤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교부(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⑥ 이륜자동차(폐지)대장 발급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7조, 제52조
		⑦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26조, 제52조
		⑧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폐지 신고를 포함한다)의 이의신청 수리(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28조, 제52조
		⑨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⑩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⑪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읍면장에 한함)	- 같은 법 제84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